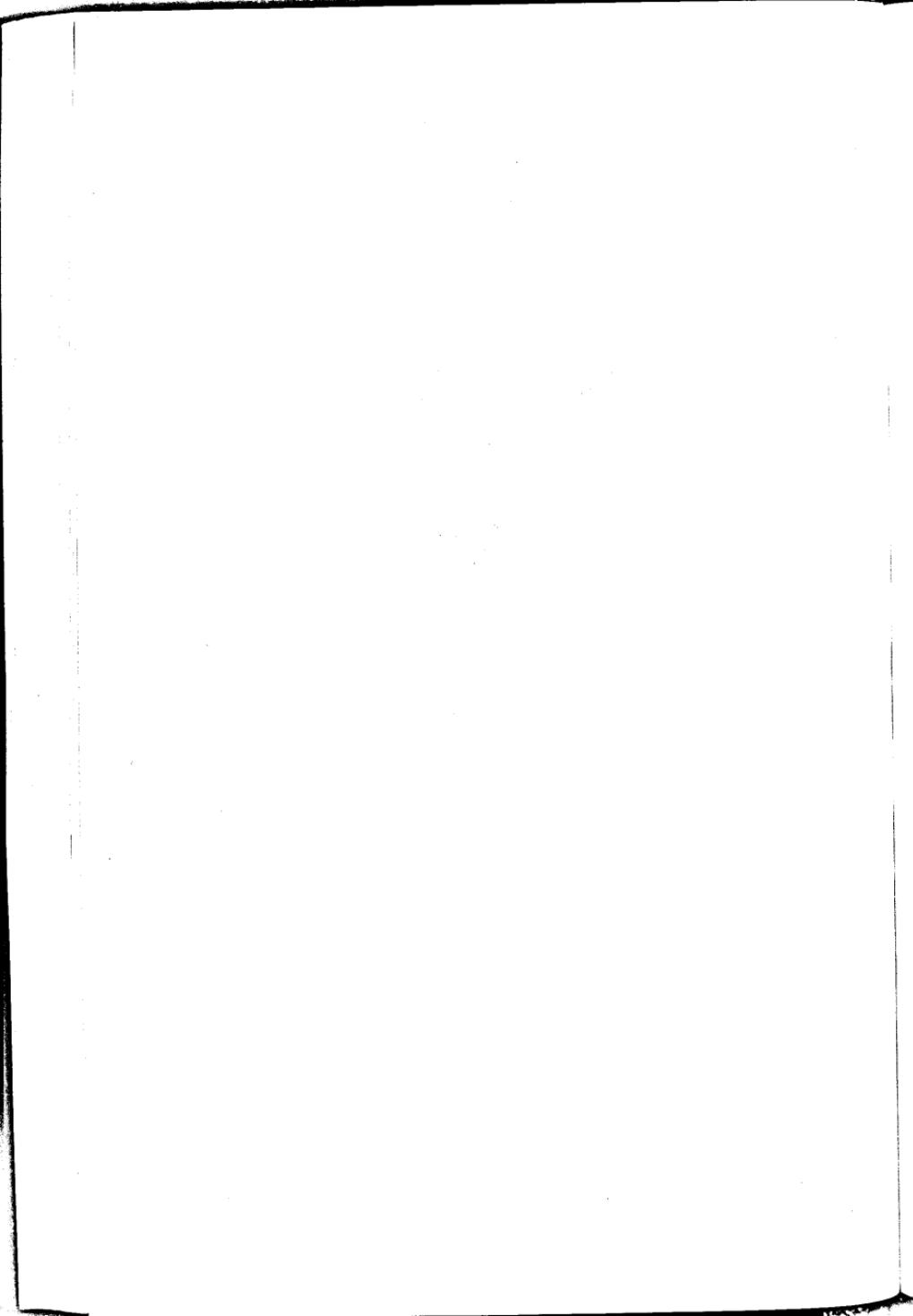


예수 고난회
의
회헌

1984



차 례

제 1 장 우리 생활의 원리	1
고난회원들의 성소	1
예수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봉헌	5
복음적 권고	7
청 빙	10
정 결	16
순 명	20
제 2 장 공동체 생활	25
제 3 장 기도하는 공동체	37
감사의 제사	42
성무일과	45
성서 독서와 영적 독서	47
묵상 기도	49
고 독	54
참 회	56
화해의 성사	60
영적 지도	61
제 4 장 사도적 공동체	62
우리의 사도적 활동에서 차지하는 고난	64

우리 사도직의 공동체적 차원	67
우리 사도직의 영역	70
제 5 장 우리 생활을 위한 양성	77
양성의 일반 원칙	77
수련 전기와 수련기	87
본회의 입회와 서품 승인	93
회원들의 이탈과 퇴회	97
제 6 장 수도회의 조직	99
제 7 장 수도회의 관리	108
권위의 기능	108
지방 공동체	119
관 구	122
총 회	126
총장과 참사회	131
총시노드	144
관구의 관리	148
준관구와 지역 대리관구	160
지방 공동체	165
제 8 장 재 산	168
결 론	178

약어

1.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

평신도 :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A A)

선교 :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A G)

계시 : 계시 현장 (D V)

교회 :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L G)

사양 :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O T)

수도 :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 (P C)

사직 :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P O)

전례 : 거룩한 전례에 관한 현장 (S C)

사목 : 사목 현장 (G S)

일치 :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U R)

2. 성청의 문서

복음 : 복음 선포 (E N)

증거 : 복음적 증거 (E T)

관계 : 상호 관계 (M R)

쇄신 : 쇄신의 이유 (R C)

독신 : 사제의 독신 (Sca)

3. 수도회의 문서

- 서간집：“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서간집” 아메데오와 크리스토포로 신부 편, 로마, 1924, 1977, 5권
- 소식：십자가의 성 바오로, 죠르지니 편, 로마, 1978.
- 진행：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시복과 시성 진행, 가에 따노 라뽀니 신부 편, 1968 ~ 1976, 4권
- 공동회칙：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1775년 공동 회칙, 죠르지니 신부 편, 로마, 1980.
- 회칙과 회헌：예수 고난회의 회칙과 회헌, 죠르지니 신부 편, 로마, 1958.

제 1 장

우리 생활의 원리

고난회원들의 성소

1.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함께 생활할 동료들을 모으셨다.

초창기에는 그들을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복음적인 다른 권고들을 지키고, 기도에 항구하며 또한 십자가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기 위하여¹⁾ 그들의 생활이 복음적 청빈에 기초를 두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분은 이 동료들이 《사도들처럼》 생활하며, 기도와 참회 그리고 고독의 정신을 길러서, 하느님과 더욱 긴밀한 일치를 이루고, 그분의 사랑의 증인이²⁾ 되기를 원하셨다.

자기 당대의 악을 예리하게 파악하시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임을 역설하시면서, 그분은 《하느님 사랑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묘한 사업》³⁾

1. 참고. 서간집 IV, 217~220: 1720년 제 1 회칙의 서문

2. 1947. 소식 n. 3: 서간집. III, 417~420.

3. 서간문 II, 499.

을 지칠 줄 모르게 선포하셨다.

2. 십자가의 성 바오로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한 교회는, 고난의 복음을 생활과 사도적으로 선포하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 수도회와 회칙을 최상의 권위로 승인하였다.⁴⁾

이에 대한 사명은 자체적인 모든 힘과 효력을 영구히 지닌다.⁵⁾

그러므로 우리은 사도적 공동체에 함께 모여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열심히 일한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며, 복음 정신과 우리 창설자의 유산에 충실히 항구하기를 원한다.

4. 참고. 베네딕또 14세의 칙서, 1741. 5. 15. 고난회 관보 (1930 ~ 1932), 265 ~ 257에서 ; 베네딕또 14세의 교서, “사목적 품위의 절정을 향하여”, 1746. 4. 18. 고난회 관보 XIII (1933 ~ 1935), 161 ~ 162에서 ; 끌레멘스 14세의 칙서 “최상의 사도직”, 1769. 11. 16. “고난회의 현금 규정”, 로마, 1958, 247 ~ 282에서 ; 비오 6세의 칙서 “빛나는 덕행의 귀감”, 1775. 9. 15. 고난회의 현금 규정 293 ~ 303에서.

5. 참고. 요한 23세의 칙서 “유익한 고통”, 1959. 7. 1. 고난회의 회칙과 회헌, 로마, 1959, V-X에서 ; 총장에게 보낸 바오로 6세의 서한, 1976. 10. 12. 고난회 관보 XXVII(1975 ~ 77), 193 ~ 196에서.

3. 그분 자신이 영광중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세상 안에 영속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성부를 향하여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과 고뇌를 함께 나눈다. 우리는 인류의 고통,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벼름 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위로 하며 고통스런 짐을 덜어주고자 한다.

하느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는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의 원인을 식별하고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므로 모든이들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분의 죽음을 깊이으로써 영광을 입게하는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의 말씀에 봉사하므로써 복음화를 지향해야 한다.⁶⁾ 우리 모두는 각자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직무에 따라 이 사도직에서 일익을 담당한다.

4.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부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이루어 주신 개인적인 성소를 긴박한 요구로서 받아들인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생활의 최상의 규범과 표준으로 삼으려는 항구한 노력,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정신으로 이 화현을 실행하므로써 형제

6. 참조 : 필립 3:10~11.

적 공동체 안에서 항구하게 살며 기도 마음으로 일하려는 의지, 우리 스스로 기도 정신을 기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는 확고한 결심,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챤적 소명을 성취하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함과 아울러, 형제들의 요구에 대하여 세심하게 배려 코자 한다.

예수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봉헌

5.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 생활과 사도직의 일 치점을 찾는다. 예수의 고난은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상에 들어오신 하느님의 권능을 계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것을 모두 버리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신』⁷⁾ 그분의 생활과 사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만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펼쳐보이시고, 그들이 성부께 나아가기 위하여 걸어야 하는 길을 일러주신, 그리스도를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관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상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보

7. 필립 2:7, 1747 소식, n.1~2, 21; 1768, n.1~2.

다 온전히 드러낼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 자기 생활을 봉헌하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6.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개인적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이며 또한 사도적인 것이므로, 특별한 서원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이러한 서원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기억을⁸⁾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는 의무를 스스로 걸어지며, 고난의 의의와 효력에 대한 지식을 각 사람과 세속 생활 속에 더욱 깊이 새겨줄 의무를 지닌다. 또한 우리 수도회는 이 서원으로 교회 안에서 고유한 위치를 확립하고, 주어진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봉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적 권고를 생활화 하므로서 우리의 서원이 일상생활에 스며들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기억을 오늘에 되살리므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구원의 누룩이 되도록 노력한다.

복음적 권고

7. 성세성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빠스카적인 힘 속

8. 참조. 서간집 IV, 220 ~ 221; 1720년 회칙; 회칙과 회헌 56 ~ 57 이하; 86 ~ 87.

으로 우리를 잠기게 함과 동시에 하느님 백성의 지체로서 우리를 축성한다.⁹⁾

우리는 이 회헌에 따른 수도생활의 서약을 통하여 이 축성을 확인하고 보다 충실하게 살고자 한다.

우리는 누구나 하늘 나라의 가치에 대한 표지요 끊임없는 기억이 되도록 하느님의 초대에 순응해야 한다.

8.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데 모인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탐구하기 위하여 신앙의 혐란한 길을 함께 출발한다.

우리들은 당신께 이끄시는 하느님을 마주 뵈오려는 같은 희망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 생활의 여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표시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여종이신 동정 마리아의 모범은¹⁰⁾ 하느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도록 우리에게 암시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준다.

9. 참조. 로마 6:3

10. 참조. 루가 1:38

9. 우리는 복음적인 진복팔단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¹¹⁾

우리는 청빈, 정결 그리고 순명을 공동체 생활의 수도자적인 빛으로 보고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항구히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므로 복음적 권고를 실행하는 것이,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빠스카 신비의 깊은 표현이 되게 해야 한다.

십자가의 말씀이 먼저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지 않았다면, 감히 십자가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한다.

청 빈

10.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¹²⁾

여기서 응답하려는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참으로 정열적인 노력을 기울여 진정한 복음적 청빈 가운데 살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는 현세 재물에서 이탈함과 동시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마음이 우리 생활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11. 참조, 마태 19:27, 루가 5:11.

12. 참조, 2 고린 8:9

또한 우리는 이러한 청빈을 실천하므로써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거나 때로는 궁핍한 상태로까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조력은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매일 매일을 성부께서 안배하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므로써¹³⁾, 내일을 위한 재물 축적을 염려하지 않는다.¹⁴⁾

이러한 청빈의 정신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열매인 바, 이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를 더 잘 준비하게 된다.

11.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던¹⁵⁾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범을 따라, 우리들 역시 우리의 소유물을 우리 것으로 여기지 않음과 동시에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생활을 선택한다.

우리는 재산의 처분권을 자유롭게 포기 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재능, 일 그리고 성과를 공동체의 사명에 봉사하기 위하여 바친다.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우리는 생활과 사도직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피해야 하고, 우리의 재량에 맡겨진

13. 참조, 마태 6:19

14. 참조, 마태 6:34

15. 참조, 사도 4:32

재산에 대해서는 본회의 다른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우리들은 누구든지 노동법에 기꺼이 복종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이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기여할 것이다.¹⁶⁾

12. 자신의 노동이든 혹은 수도회의 입장에서 얻든, 우리 수도자들이 획득하는 것들은, 곧 은인이란 칭호 아래 제공된 것, 사례금, 연금 및 서약 후에 제공되는 개인적인 모든 것은 수도회에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은 수도자 자신의 재산으로 남는다.

13. 재화의 불공평한 분배가 분열, 증오 그리고 근심의 주 원인이 되어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청빈이 이 세상 재물의 진정한 가치와 올바른 목적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생활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 간의 정의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화를 사용코자 한다.¹⁷⁾

16. 참조. 2데살 3:10 ~ 12

17. 참조. 2고린 9:7~9.

본 수도회와 관구, 지방 공동체들과 수도자 각자는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하며,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의 연대성을 증거하게 된다.

14. 이러한 청빈 정신에서, 우리는 서원으로 우리의 개인 소유물에 대한 처분권을 포기한다.

또한 참되고 명백한 청빈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합법적인 권위를 지닌 장상과 함께 현세 재화를 사용하고 처분할 것을, 서원의 효력에 따라, 약속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그리스도의 청빈에 효과적으로 동참하는 우리들은¹⁸⁾ 『청빈은 수도회 전체가 그 아래에서 싸우는 것 말이다』¹⁹⁾ 하신 우리 창설자의 모토를 더욱 충실히 실행코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15. 종신 서원을 발한 수도자들은 관구 권위의 적절한 규범에 따르고, 총당의 승인을 받아, 개인 재산의 소유권을

18. 참조. 마르 10:45

19. 회칙과 회헌 42 ~ 43 면.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

정 결

16.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된 인간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소명을 수행한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완전한 자유로 본받는, 우리들은 하늘 나라를 위한 독신 생활을 선택하고²⁰⁾ 지극한 사랑이신 하느님과 인류 형제들에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한다.

17. 이러한 선택은 또 다른 신앙 고백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²¹⁾ 인간적 사랑의 깊은 의미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모두 하나되게 하소서》²²⁾ 하고 기도하며 간청하신 그리스도의 소망이, 대부분의 견해

20. 참조 마태 19:12.

21. 1 고린 15:28.

22. 요한 17:21.

와는 달리, 이 세상에서 성취될 수 있음을 증명코자 한다.

18. 당신 교회에 주신 하느님의 선물인²³⁾ 독신생활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고 섬기려 오신》²⁴⁾ 그리스도의 보편적 사랑에 우리들을 교회와 함께 참여케 해준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들의 기쁨, 슬픔과 근심에 더욱 민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봉헌 생활은 복음과 인간에 대한 봉사에 머물게 될 것이다.

19. 복음적 독신생활은 인간적 애정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풍부하고 부드럽게 변형시키므로써, 사랑이 성숙하게 된다.

온갖 형태의 포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위한》²⁵⁾ 독신생활에서 완전한 정결을 지킬 의무를 서원으로써 스스로 부과한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지키려면, 마음의 성숙과 자제 그리고 균형잡

23. 참조 : 1 고린 7:7

24. 마태 20:28.

25. 독신 56.

26. 참조. 루가 18:29.

힌 성품이 우리에게 요구되며, 아울러 하느님의 은총에서 흘러 나오는 힘 그리고 그리스도와 긴밀히 일치된 생활이 함께 필요하다. 예수와 인류의 모친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우리의 모범이고 도움이 되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정어린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깃들이게 되면, 이 또한 우리의 인격을 견고케하고 발전시켜 우리의 정서생활에 항상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순 명

20. 하느님은 세상과²⁷⁾ 각 개인에²⁸⁾ 대하여 사랑에 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성부의 의견을 자유롭게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신분을 취하셨고, 인간의 형제가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²⁹⁾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들도 역시 이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여, 성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겸손하게 듣고 질문하므로써, 우리 생활을 그분의 말씀으로 견주어 봄으로써, 일상생활의 사건들

27. 참조. 요한 3:16.

28. 참조. 로마 5:8.

29. 필립 2:8.

속에서 시대를 징표를 분별하므로써, 합법적인 권위 아래서 이 회헌을 실행하므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하므로써, 매일 그분의 뜻을 살펴야 할 것이다.

21. 우리는 복음적 순명 가운데서 크리스챤 생활과 사도적 직무의 기초를 찾는다.

믿음의 정신으로, 우리들이 특히 장상들과 공동체의 중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알아듣는다면, 그리스도의 활기찬 현존과 성부께 대한 항구한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들이 그분과 더불어 구원의 의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순명은 선교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게 생활하고 일하게 될 때, 우리의 공동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행할 때 우리의 연대성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하여》³⁰⁾ 우리들의 의무를 자유롭게 수용하므로써 이러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0. 참조 에페 4:12.

22. 우리는 공동책임과 상호 의존이 각자에게 완전한 자유와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길임을 인정한다.

복음은 인간적인 조건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도록, 즉 성부의 뜻에 대한 순종과³¹⁾ 형제적 사랑³²⁾으로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권한다.

협력하는 정신, 평화와 조화의 정신으로 생활하므로써³³⁾ 우리들은 온갖 형태의 이기심과 권력 남용을 우리들 자신과 세상에서 추방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인간을 해방시키는 십자가의 권능을 알리고자 한다.

23. 장상은 모든이들의 형제이다. 수도자들은 개방적이며, 성실한 자세로 그와 대화할 것이며, 그에게 맡겨진 일은 특별한 책임이 따르는 직무임을 신앙의 정신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를 성실하게 키워야 할 지도자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장상이 먼저 사랑과 존경이 표현되는 성실한 대화를 이끌어서, 모든이들이 성부의 뜻을 찾고 분별하며, 이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장상은 항상 공동체 전체와 수도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 회헌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

31. 참조. 마태 7:21; 6:10

32. 참조. 요한 13:34; 15:12, 17.

33. 참조. 필립 2:2 ~ 4.

장상이 자기 직책에 속하는 권위를 행사할 때에는 신뢰와 협력의 정신으로, 공동체 생활을 활기 있게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24. 우리는 복음과 본 회헌에 따라 생활하기로 서약한 만큼, 본 회헌에 따라 명하는, 합법적인 장상들의 명령을, 순명 서원으로써 수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우리는 교황과 우리 수도회의 총장에게 순명 서원으로 인하여 순종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공동체 생활

25. 고난회원으로서의 우리의 성소는 복음적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챤 사랑을 충만케 하라는 부르심이다.

마음과 정신을 하나되게 하는 사랑으로써, 우리들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³⁴⁾ 하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증거코자 한다.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무엇보다도 구세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임종 시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부하셨다.³⁵⁾

26. 크리스챤 공동체는, 십자가에 못박히 시므로써 《분열의 벽을 헤어버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되게 하신³⁶⁾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은 만인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존중하며, 각 사람을 고유한 인격체로

34. 요한 13:35.

35. 진행, Ⅲ, 491.

36. 참조. 에페 2:14 ~ 16.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보다 낫게 생각하고,³⁷⁾ 각자의 인격과 재능을 함양하도록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는 성령이 각 형제들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는 줄 알고 있으므로, 당신이 원하시는대로 선물을 주시며,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³⁸⁾ 기쁘게 생각한다.

27. 공동체 생활은 회원들의 형제적 교제가 지속될 때 꽂힌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 사이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대화를 통해 복음과 우리 회현 그리고 시대의 징표라는 시각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성찰하므로써 우리는 서로 돋고 권고하며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들은 수도생활의 목

37. 참조. 필립 2:3.

38. 참조. 1 고전 12:6.

적을 보다 훌륭히 달성할 수 있는 우리 생활의 형태와 실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각자는 이러한 대화에의 참여를 자신의 의무로 생각해야 하며, 장상의 승인을 받은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한다.

28. 형제들과의 일상생활에서 각자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로서 대화할 것이며 사려깊게 행동해야 한다.³⁹⁾

서로 존중하는 자세는 형제들의 친교를 두텁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참되고 지속적인 우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동료 수도자들을 존중하고자 하는 깊은 사려는 우리로 하여금 회헌을 준수케 하고 예모있게 행동하며 말하고, 침묵 시간과 장소를 잘 지키며, 수도생활의 정신을 함양시키는 적절한 형태의 휴식을 취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체 생활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29. 전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보다 인격적인 차원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병든 형제들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야한다.⁴⁰⁾ 우리는 이해와 주의,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배려로써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39. 참조 마태 23:8

40. 참조. 마태 25:36.

30. 고령자들에게도 같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⁴¹⁾ 공동체는 이러한 노령기에서도 그들의 생활이 보람되고 유익하도록 돌보아드려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을 준비해 드림으로써, 또 그들에게 가능한 가벼운 봉사직을 안배해 드림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들의 연륜에서 나오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경험과 지혜는 회원들에게, 특히 젊은 형제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⁴²⁾

31. 우리들은 사망하여 성부께 나아간 형제들을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총본부나 관구 권위가 결정한 그분들을 위한 기도는 충실히 또 애정깊게 바칠 것이다.

32. 각 지방 공동체는 본 수도회와 결합된 유대를 공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와 직무의 다양성에서 연유하는 생활양식의 정당한 차이들은 수도회의 풍요성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고난회 성소의 근본적인 성격은 순수하게 보전되어야 한다. 지방 공동체는 관구 내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형

41. 참조 레위 19:32.

42. 참조 집회 25:6

제들과 더욱 자주 교류하여 이러한 단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단일성에 대한 이런 체험에서, 우리는 관구나 수도회 내에 있는 직무와 문제들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도회의 일부에 대한 인적, 물적 원조 및 다른 형태의 도움을, 총본부와 관구의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제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33. 그리스도께서는 모든이를 사랑하셨고, 모든이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며⁴³⁾, 모든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셨다.⁴⁴⁾ 이러한 보편적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고루 퍼져야 하며, 이 세상에서 함께 존재하며,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교회 내의 광범위한 공동체들과 근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⁴⁵⁾ 우리 공동체들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다른 단체의 생활과 계획 그리고 문제점을 함께 나눈다.

34. 각 공동체는 자리잡고 있는 지방 교회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지방 교회의 문제를 알아야 하며, 지방 교구장과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그밖의 사람들과 실천

43. 참조. 요한 17:9 ~ 19.

44. 참조. 마르 10:45.

45. 사목 40, 1.

적인 면에서 협력해야 한다.

사도적 정열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일시적으로 이 생활을 체험해보려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수도원은, 관구 권위의 지침에 따라, 이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항상 내적 질서는 지켜야 한다.

고위 장상들은 봉쇄구역에 해당하는 수도원의 한계를 법으로 정할 것이며, 거기에는 항상 수도자의 방과 부속 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35. 우리들도 사회의 일원인 만큼, 우리를 주위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각 공동체는 크리스찬적인 방법으로 사회와 긴밀히 관계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과표는 지방의 관습에 적당히 맞추므로써 수도자들이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고난회원들의 공동체는 구세주께서 원하신 그대로 인간의 누룩이요 소금이 될 수 있도록⁴⁶⁾ 자신의 신원을 충실히 보존하여야 한다.

36. 수도자들의 부모는 수도회의 가장 큰 은인들이다. 그

46. 참조. 마태 5:13; 루가 13:21.

러므로,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며,
수도회의 규범에 따라, 사정이 하락하는대로 방문해야 할
것이다. 다른 친척이나 친구 그리고 은인들에게도 같은 원
칙을 적당히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 3 장 기 도 하는 공 동 체

37. 위대한 기도자이신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기도의 중요성을 당신의 말씀과 표양으로 가장 힘있게 강조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추종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열망하셨고, 우리의 공동체들이 하느님을 깊히 체험하는 합당한 장소가 되며, 참으로 기도의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⁴⁷⁾

그분이 내외적 침묵으로 생활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신 것은, 침묵이, 기도의 정신에 꼭 필요한, 영혼의 깊은 안정과 평화를 보존하게 하며, 성가신 일에서 해방시키고, 일상사의 관심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을 진정시키기 때문이었다.⁴⁸⁾

38.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도중에 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본받는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양자의 지위에 오른 우리들은 《아빠,

47. 회칙과 회헌 2~3 ; 8~9면.

48. 회칙과 회헌 101~102면.

아버지》⁴⁹⁾라고 외쳐 부를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우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된 구원의 신비를 관상하고,⁵⁰⁾ 이 신비를 확장하는 일에 협력하여, 세상 끝날에 그 신비가 드러나기를 고대한다.⁵¹⁾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심오한 사도적 풍요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성장시키고,⁵²⁾ 형제들과 더불어, 특히 가난하고 벼림받은 사람들과 우리 생활과의 연대를 반향하는 것이어야 한다.⁵³⁾

39.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기도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성 삼위와 일치하여 살게 해준다.⁵⁴⁾ 우리는 성부의 경애하을 초대에 기도로써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위격, 특히 그분의 빠스카 신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며,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개인 묵상에서 그 신비를 관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생활과 활동이 연루되어 있는 세상사를 통하여

49. 로마 8 : 15

50. 참조. 에페 1 : 9 ~ 12.

51. 참조. 골로 3 : 4

52. 수도 7.

53. “수도 생활의 관상적 차원”, 수도자 및 재속회 성성, 로마, 1980, 12. 8, A : 5.

54. 로마 8:26 ~ 27.

우리는 이 신비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게 되며, 전례 거행에서 이 신비를 되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성부께 가는 여정 중에 기도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40. 기도생활은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복음에 비추어 반성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들 각자의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사도적 봉사생활에까지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스스로 늘 자문해 보아야만 한다.

41. 우리의 기도생활은 그 최상의 표현을 교회의 기도인 전례에서 발견한다.⁵⁵⁾

전례력의 거행을 통하여, 우리는 크리스챤 신비를 충만하게 만끽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느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에서 생명의 빵으로 양육되어야 한다.⁵⁶⁾

감사의 제사

42. 감사의 제사를 거행할 때, 성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55. 전례 5 ~ 11.

56. 계시 21.

성자 주위로 모으신다.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각자와 모든 사람들의 제물을 당신의 구속 제물과 합치신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새롭게 하고, 그분의 몸과 피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므로써, 그분의 죽음을 전하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해야 하며, 죄의 사함을 받고 생기를 회복하며, 그분의 영광스런 생명에 동참할 보증을 받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모든이들과 하나되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감사드려야 할 것이며, 우리들의 공동체 생활과 일을 봉헌하고, 우리와 모든 사람들의 요긴한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의 제사는 우리들이 표현하는 최상의 예배이다.⁵⁷⁾

43. 감사의 제사는 각 공동체의 중심이다. 가능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근본적인 행위로서, 매일 함께 이 성사를 거행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같은 몸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를 일치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같은 정신으로 길러주며, 표현하고 판단

57. 전례 2.

케 할 것이다.

성체성사를 기쁘게 거행하면, 각 수도자와 공동체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 내재해 있으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분의 죽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들이 충실히 응답하도록 일깨울 것이다.

44. 우리는 이 신비를 거행하기 위하여 영혼의 잠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성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화로 알고 있는, 우리는 온종일 열렬한 감사와 흄승으로 이에 응답해야 한다.

성무일과

45. 우리는 공동기도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특히 성무일과를 통하여, 온종일 미사성제의 찬미와 감사 행위를 연장한다.⁵⁸⁾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기도하는 교회와 일치된 우리 공동체가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 바치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무일과의 계시받은 기도문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

58. 전례 84.

아가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며 영적 생명을 기르시는 성부의 음성을 듣는다.⁵⁹⁾

46. 우리는 성무일과를 공동으로 거행한다. 그러므로 모든 수도자들은 성무일과가 합당하고 유익한 공동체 기도의 체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밀하게 결합시키며, 형제적인 일치로 한데 묶는 끈이 된다.

관구 참사회는 각 공동체들이, 될수 있는대로, 모든 성무일과를 공동으로 기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최소한,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만은 항상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성서독서와 영적독서

47. 하느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만남은 거룩한 전례 거행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성서독서》는 공동체와 각 개인의 눈을 성서로 돌리게 하므로써 더욱 심오하고 열렬한 정신 자세를 갖추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독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들의 지식을 넓히는 촉진제가 되고, 삶의 의미를 밝혀줄뿐 아니라, 개인기도의

59. 계시 21.

샘을 채워줄 것이다.⁶⁰⁾

48. 또한 하느님의 말씀은 기록된 교부들의 글, 교회의 교도권, 성인들의 표양, 우리 사부님 및 기타 다른 영성 서적에서도 표현되어 있다.

묵상기도

49.십자가상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개인기도 중에 참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묵상기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것으로 간직하라는⁶¹⁾ 권고에 대하여 개인적인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지니신 그 사랑에 뿌리를 박고 기초로 삼을 수 있게 된다.⁶²⁾

개인적인 묵상은 공동체 기도를 보완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묵상은 우리들의 생활과 일상적인 일에서 특별한 형태로 기도 정신을 함양시킨다.

60. 계시 25

61. 참조. 필립 2 : 5

62. 참조. 에페 3:17 ~ 19 .

50. 우리 사부 성 바오로께서는 고난을 열렬히 묵상하는 것이 만인의 회개와 성화를 위한 최상의 방법임을 발견하셨다.⁶³⁾ 우리 창설자의 가르침과 경험으로 지도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충실하게 봉헌하려면, 십자가에 못박 혀신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더욱 훌륭히 닮게될 것이고, 우리들이 체험한 바를 전하게끔 준비될 것이다.⁶⁴⁾

51. 우리는 개인기도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정신을 길러야 할 것이며, 매일 많은 시간을 묵상에 할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수도자들은 매일 적어도 한시간을 묵상에 할애해야만 한다.

특수한 문화적 배경과 각 지역 및 연령층의 심리적인 요구를 감안한 우리들은 하느님과의 진정한 일치가 우리 공동체에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되기 위하여, 묵상기도의 다양한 형식을 장려하는 바이다.

63. 회칙과 회헌. 4; 86~87 ; 서간집Ⅳ ; II, 272~274, 57~59. 1747 소식, n. 1~2; 1768, n.1~2.

64. 서간집 II, 224;II, 469;II, 827.

52. 일에 정신이 팔리거나 혹은 기도하려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럴 때에는 우리의 성실성과 참석 그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항구하려는 원의를 증명해줄 것이다.⁶⁵⁾

기도에 항구하고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우리들 각자의 긴박한 의무이다.⁶⁶⁾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고, 개인기도의 의무에 대하여 일깨우므로써, 서로를 도와야 한다.

53. 주님의 모친이 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우리의 기도생활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리하신다. 마리아의 모범에 따라 우리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간직해야 한다.⁶⁷⁾

우리는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공경한다. 우리는 항구하고 신뢰에 가득한 그분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특히 로사리오의 신비를 묵상하므로써, 십자가의 신비에 함께 하신 마리아를 사랑하며, 성부께 가는 우리 길에서 자녀로서 필요한 은총의 선물을 당신의 간구하심으로 얻어주심사하고 마리아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⁶⁸⁾

65. 공동 회칙, 1755, n. 22.

66. 참조 루가 18:1; 에페 6:18; 1 데살 5:17

67. 참조. 루가 2:19,51.

68. 교회 63 ; 서간집 I , 349 ~ 350

고독

54. 고독은 오늘날에 와서도 고난회원들의 생활에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는 자주 고독을 찾으셨고,⁶⁹⁾ 또 제자들에게도 권하셨다.⁷⁰⁾

기도하는 사람이자 기도의 교사이기를 희망하는 우리들은 스스로 고독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⁷¹⁾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경향에 대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또 성부와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뜻을 알아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례 피령 기간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55. 우리 공동체 내의 현대적인 대중매체 이용은 수도자들의 잠심 정신의 요구와 봉헌의 고유한 품위 및 우리 수도원의 수도자적인 특성 존중에 따라 고려되어야 마땅하며, 동시에 우리의 사도직에 유익하다는 입장에서 세상사를 올바르고 조화있게 또 꼭 필요한 것만 알고 지식을 넓힌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69. 참조. 마태 14:23; 마르 6:46

70. 참조. 마르 6:31 ~ 32; 루가 9:10

71. 회칙과 회헌 6 ~ 9 ; 1747 소식, n.6; 1768,n.4。

참회

56.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에 대한 관상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⁷²⁾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우리에게 촉구한다.

57. 우리는 사도직 활동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희생당할 준비를 하므로써, 또 공동생활에 부과된 무거운 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 약점으로 야기되는 허물에 대하여 인내하므로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진정으로 함께 자리하므로써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닮은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⁷³⁾

58. 크리스챤적 회개에 대한 인간 본연의 응답은 어떤 외적인 표시를 요구한다. 이러한 응답을 촉구하려면, 우리 창설자의 참회 정신에 따라,⁷⁴⁾ 우리 공동체 들은 참회의 외적 행위가 생활 자체의 일부분이 되게 해야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므로, 지역의 문화와 정신과 조화되어야 하며,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일어나

72. 루가 9:23

73. 증거 17~18.

74. 1747 소식, n.15.

야만 한다.

59. 우리 회원들은 매 금요일마다, 그리고 적어도 한주일에 다른 2일은 단식과 절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절제의 경우에는 관구 참사회가 참회의 다른 행사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참회의 방법과 시기 혹은 다른 행사 역시 관구 참사회가 결정할 수 있으나, 항상 전례 시기 특히 참회 시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 장상이 이 규범에 대하여 관면을 줄 수 있다.

화해의 성사

60. 우리는 복음에 씌어 있는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자주 화해의 성사를 받는다. 이 성사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느님을 거슬려 범한 죄의 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들이 범죄하므로써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사랑과 표양 그리고 기도로써 협력해온, 교회와 공동체와 화해해야 할 것이다.⁷⁵⁾

우리는 죄와 화해의 사회적인 이러한 차원을 참회의 공동체적인 행사를 통하여 적절히 표현코자 한다.

75. 교회 11.

영적 지도

61. 규칙적인 영국 지도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겠끔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반성할 수 있는 적당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지도자와 대화할 때에는, 서로 믿고 신뢰하므로써,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마음의 평온함을 얻으므로써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⁷⁶⁾

우리 창설자의 모범을 따라, 우리들은 영적 지도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며, 또한 화해의 성사에서도 영적지도를 할 수 있다.⁷⁷⁾

76. 1768 소식, n.9.

77. 회칙과 회헌 122~123면

제 4 장 사도적 공동체

62.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를 전세계에 펴고, 모든 사람을 구속적인 구원에 참여케 하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전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창립되었다.⁷⁸⁾

교회와 그 신비에 특별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도자들은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명을 봉헌하므로써, 특수한 형태로 교회의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는 우리 수도회에 대하여 사도직의 특별한 부분을 위탁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뚜렷하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맺게 하므로써, 고난에 대한 기억을 영원토록 살아있게 하며 거행하라는 것이다.⁷⁹⁾

창설자의 표양과 가르침은 수도회에 대하여 영감을 주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도적 활동에 완전한 봉헌을 통하여 참여토록 촉구하는 우리의 유산이다.

63. 수도생활은 본질적으로 사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각자의 재능과 환경에 어울리는 사도직에 적당한 방

78. 평신도 2.

79. 칙서, “최상의 사도직” 1, 3, 5.

법으로 참여 한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봉사를 제일로 생각하고 행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충실히 살며 설교해야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⁸⁰⁾이다. 이 진리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시며, 《생명의 말씀》⁸¹⁾이다. 교회에 위탁되어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또 성사를 거행하도록 그들을 한데 모은다. 그 당시의 생활과 역사 속에서 사람이 되시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⁸²⁾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우리들은 복음적 증거와 설교의 예언적 힘을 통하여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므로써, 《말씀의 실천자》⁸³⁾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도적 활동에서 차지하는 고난

64. 교회 안에서 지닌 특수한 사명 때문에, 우리는 성 바오로의 다음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설교하고》⁸⁴⁾ 《그분은 부활하셨다》⁸⁵⁾

80. 에페 1:13

81. 참조. 1 요한 1:1

82. 사도 10:38

83. 야고 1:22

84. 1고린 1:23

85. 마태 28:6

고 선포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신비가 그분의 생애에서 극히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필연적으로 인정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죽음에도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죄와 과도한 자애심에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므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 주셨기》 때문이다.⁸⁶⁾

65. 우리 고난회 회원들은 빠스카의 신비를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기꺼이 말해야 하며, 믿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선포할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신비는 단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인간 생명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평화, 진리 및 생활고에 시달리므로써, 《오늘 날에도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의 현실임을 역설해야 할 것이다.

86. 1 베드 2:21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신비체의 고난이 하나의 구원의 신비를 이루므로, 우리 성소는 그리스도와 인간의 고난을 철저하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비를 묵상하여 더욱 깊이 체험하도록 신자들을 인도해야 하고, 하느님과 더욱 친밀한 일치를 이루도록 가르쳐야 하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동시대인들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66. 우리 창설자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다 훌륭하고 보다 쉬운 방법으로 묵상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지칠줄 모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셨다.⁸⁷⁾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의식에 따르고, 《대중적인 신심 곧 신앙심》⁸⁸⁾의 진가를 이해해야 하며,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관상하는데 도움이 될 새롭고도 창의적인 방법을 사랑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창설자께서는 각 개인의 영적 지도에 열심히 임하셨는데, 이것은 또한 현대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매우 효과적인 봉사인 것이다.

우리 사도직의 공동체적 차원

67. 우리의 사도적 활동은 공동체 생활의 표현이다. 우리

87. 회칙과 회헌 58-59면

88. 복음 48.

는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에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풍요롭게 하거나, 혹은 공동체 생활을 육성하는 형태의 사도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도적 활동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도직의 계획과 예정표 속에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수도자들의 형제애를 뒷받침해줄 것이며, 사목활동의 효과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68. 비록 동등하게 카리스마를 부여받지는 않았어도⁸⁹⁾ 모든 형제들은 수도회의 사도적 목표와 독창성을 함양해야 할 의무감을 느껴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 회원들이 받은 선물들을 사도적 봉사를 위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교회와 이웃에 대한 봉사가 우리 각자로부터 소중하게 여겨지며 증진되어야 한다.

수도회의 다양한 사도적 활동에서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수도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89. 참조. 1 고린 12:4 ~ 11

69. 인간 공동체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참되고 선하며 고상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추구하려는⁹⁰⁾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과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교회와 세상에 있는 오늘의 요구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들의 독특한 사명과 우리 수도자들의 재능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사도직의 영역

70. 우리 창설자의 전통에 따라, 우리는 벼림받은 지역 중에서도 더욱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택하여 복음화되어야 할 사람 그리고 재복음화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⁹¹⁾

수도회는 말씀의 봉사 가운데 본회에 알맞은 형태를 취하고, 복음화를 구현하기에 적당한 형태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비록 우리들이 본회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수행할 수는 있으되, 거룩한 순회 설교와 영신수련에서 행하는 설교가 우리 활동의 중심으로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90. 필립 4:8

91. 총장에게 보낸 바오로 6세의 편지, 1976. 10. 12. 고난회
판보 XVII (1975 ~ 1977), 195면, 참조. 회칙과 회헌 94 ~ 95면

71. 점점 중요해지는 사도직의 일부는 크리스챤 신앙을 상실한 집단으로 하여금 다시 크리스챤 공동체의 활기찬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활동이다.

이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도록》⁹²⁾ 하느님이 우리에게 문을 여실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할 것이다.

72. 가난한 사람들의 이마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름을 보셨던⁹³⁾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표양을 따라, 우리는 믿음과 형제적 사랑의 정신으로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한다.

교회의 교도권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봉헌 행위에 입각하여, 우리는 우리 생활과 진실한 사도직 그리고 믿을만한 징표들이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양식은 우리 주변에 보이는 불의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 되어야 하며, 소비사회에 항거하는 지속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무에 수반되는 힘든 일은, 우리의 선교에 충실했던 정신으로, 우리가 져야할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⁹⁴⁾

92. 골로 4:3

93. 진행 1, 572.

94. RH nn 7 ~ 12.

73. 지방 교회에 속하는 우리들은 교회의 사목적 요구에 동참한다. 우리는 교구 공동체의 청원과 원의에 대하여 개방적이고도 준비된 자세를 견지하되, 동시에 우리 수도회의 특수한 성격과 교회 안에서 지니는 독특한 사명을 고수하면서, 조직적이고 희망찬 사목직에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므로써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십자가의 말씀을 선포 하는 것이 우리들의 독특한 사도적 직무이며, 우리 공동체의 생활양식이 우리 수도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교회 전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임을 항상 목전에 두어야만 한다.

본당의 접수는 지방과 관구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총장과 그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74. 모든 크리스챤들의 일치는 교회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크리스챤 간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뜻과 분명히 상반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치욕이며, 모든 피조물에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거룩한 명분에도 해를 끼친다.》⁹⁵⁾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마땅한 준비를 갖추어 개인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일치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95. 일치 1.

75. 교회의 선교사적인 성격을 염두에 두고, 또 본 수도 회의 창립 정신에 충실하기를 소망한다는 전재 아래,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는 선교사적 직무에 종사한다.

《이 선교활동의 특별한 목적은 아직 교회가 뿌리내리지 못한 백성들과 집단 속에 복음화와 교회를 심는 것인만큼》⁹⁶⁾ 사회적 협력이라는 보완적 의무가 등한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선교사의 사도직은 수도회의 회원들에게 공통적인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우리 수도회의 일차적, 중심적 활동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모든 관구는 이 활동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조정해야 하는 총본부 권위에 따라 선교 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76. 사목적이든 교회일치이든 선교적 사도직이든, 사도직의 모든 영역에서는 생활의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 직무에 알맞는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 그리고 변천하는 시대와 장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응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사도적 활동과 사도직의 영역을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조사하는 것은 각 관구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

96. 선교 6.

제 5 장

우리 생활을 위한 양성

양성의 일반 원칙

77. 하느님의 첫번째 양성 책임자이심을 알고 있는, 본회는 각 수도자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협력한다. 수도생활로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 곧 복음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수도회는, 고난회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대한 봉헌과 교회에 대한 봉사가 자유롭게, 의식적으로 수도자들에게서 길러지며, 또한 초기에 받은 양성이 조화있게 완성되도록 정성껏 도울 것이다.

78. 양성 활동의 목적은, 본회 안에서 이루어질, 인간적, 수도자적인 완전한 생활이란 기본적인 원리를 계속하여 명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도회의 본질, 성격 및 목적에 대한 이해와 동화에서 97) 성장하여야 하며, 성서와 신학 전례와 교도권

97. 수도 26.

의 본질적인 원천 및 기도생활의 실제적인 양식과 우리 수도회의 사도직에 관하여,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항상 잘 알고 있어야 한다.

79. 수도회의 활력과 성장에 대하여 모든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열렬다 활동생활에서 표현되고, 내적 기쁨으로 드러나며, 공동체의 형제적 협력으로 떠받쳐주는 모습, 등등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카리스마에 대한 충실이 고난회의 생활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초대장이 될 것이다.⁹⁸⁾

80. 공동체들, 특히 양성 수도원은 기도와 형제애의 진정한 학교가 되어야 하며, 교회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자신의 사명을 생생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깨닫고 있어야 한다.

수도자들은 그들의 생활과 사도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고난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청년들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오로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한 능력있고 도울줄 아는

98. 수도 24.

수도자들 속에서, ⁹⁹⁾ 지원자들은 성소를 키우고 보존하는데 형제애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81. 수련장과 원장 그리고 지원자를 양성하는 다른 수도자들은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위 장상이 임명한다. 그들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하며, 건전한 교의와 적절한 사목 경험이 있어야 하고, 본회의 역사와 영성에 능통해야 하며, 또한 그들은 고난회의 진정한 가족정신을 지원자들에게 열심히 또 조화있게 가르쳐야 하고, 각 지원자들이 자신의 성소를 열렬히 사랑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원자들이 공동체의 회원임을 점차적으로 체험하게 하며, 동시에 수도회의 활력과 일에서 그들이 기여해야 할 의무를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82. 양성 책임자와 공동체는 지원자들의 인간적, 윤리적, 및 영적 특은 그리고 육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¹⁰⁰⁾ 성소의 확실성을 식별하며, 그 과정에서 지원자들과 동행해야할 책임이 있다.

99. 수도 18; 사양 5.

100. 사양 6; 수도 18.

양성 책임자들은 지원자들의 인간적 성숙을 기하고, 마음의 안정과 자제력을 기르며, 책임감을 키우고, 그리고 고난희원의 성소가 요구하는 바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에서 점차적으로 발견해내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자들이 사회생활의 이념과 사건들을 더욱 깊이 알도록 이끌므로써, 복음의 빛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3. 지원자는 인간적, 영적인 선물을 계발하여, 그것을 수도생 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원자는 합법적인 권위자가 지혜롭게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부과하는 필수적인 지도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하느님이 주신 성소의 은총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또 자유롭게 협력하므로써, 양성 책임자의 지도에서 진보가 있어야만 한다.

양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지원자 자신에게 있다. 또한 형제들과의 일치에 필요한 협력과 사랑의 정신을 배양하며,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적응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도 지원자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84. 무슨 사도직이든지,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

기 때문에, 고도의 능력을 요구한다.

모든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보다 깊게 하고, 기도를 심화시키며,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공부를 계속하며 적당한 경험을 쌓아야만 한다.¹⁰¹⁾

85. 본회는 성좌의 양성 관계 문서와 우리의 특별 규정을 토대로 하고, 회원들의 인간적, 지적, 수도자적 양성과 사도적 양성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 양성과 계속 교육에 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¹⁰²⁾

모든 관구와 준관구 그리고 지역 대리관구는 각국 주교회의의 지침과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 양성 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적당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채택된 계획서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6. 우리의 성격과 고유한 서원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본회 그리고 창설자의 영성 전반에 걸친 교육은 특수 과정이나 세미나를 통하여라도 양성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01. 사양 22.

102. 사양 13 ~ 18.

수련 전기와 수련기

87. 우리는 고난회원들의 생활을 위하여 성소를 정성껏 계발하여야 한다.

지원자들은 신하교나 혹은 보다 효과적이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성소에 응답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¹⁰³⁾

성소 계발과 지도에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사도직을 위한 인재의 필요성을 예견해야 한다.¹⁰⁴⁾

88. 수련전 청원자는 그 기간 내에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여야 한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성소를 깊이 생각하고, 수련기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서로를 이해하며, 보다 나은 인간적, 정서적 성숙을 기할 수 있어야 하고, 수도생활의 목적에 대하여 명확한 이상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¹⁰⁵⁾

89. 수련기의 목적은 후보자들이 고난회 성소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본회의 생활양식을 체험하며, 그 정신을 얻고, 사도적 봉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동시에

103. 사직 11. 수도 24

104. 선교 23.

105. 쇄신 4.

수도회에게는 후보자들의 선의와 재능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기회가 주어진다.¹⁰⁶⁾

90. 관구 총회는, 공법과 특별 규법을 준수하면서,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 가) 수련기에 들어가는 구비조건 ;
- 나) 수련기의 계획서를 승인하는 방법 ;
- 다) 최소 1년, 최고 2년을 경과하지 못하는 수련 기간

91. 수련기는 성직지망자 혹은 평수사 지망자들에게 공통적이다. 수련 시작 혹은 도중에 혹은 수련기가 끝난 후에 성직지망자 혹은 평수자 지망자는, 참사회의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관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장 비서는 결정 내용을 공표한다.

92.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참社会의 동의를 얻은 총장이 지정하는 수도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고위 장상은 모든 수련자들이 일정 기간동안 지정된 다른 수도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수련자들의 보다 나은 양성을 위하여, 수련장은 고위 장

106. 쇄신 4.

상의 동의를 얻어서, 수련자들이 일정 기간동안 수련 공동체 밖에서 사도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나, 일개월이 초과되어서는 않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법과 특별법은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

본회의 입회와 서품 승인

93. 관구장은, 참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수련기를 승인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수련자를 내보내며, 또한 서원 간신과 교회 직무를 허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관구장은,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유기 서원과 종신 서원을 허가하며, 부제직과 사제직을 허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각 관구는 고위 장상과 그 참사회가 이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다른 기구를 결정해야 한다.

94. 종신 서원자들은 전국 주교회의의 규범에 따라 종신 부제직을 받을 수 있다. 관구 총회가 규정할 수 있는 것 외, 본회의 규범으로 지켜야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

- 가) 승인은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관구장이 한다.
- 나) 사제 서품에 요구되는 연령과 같아야 한다.
- 다) 합당한 지적, 사도적 준비가 선행 되어야 한다.

95. 관구 규정은 유기 서원의 정확한 연장 기간을 명시한다. 이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6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고위 장상은 특별한 경우에 유기 서원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관구 총회에서 규정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6. 관계되는 고위 장상 혹은 그 대리자는 수도회의 고유한 전례서에 따라 거행되는 후보자의 서약을 받는다.

서원 양식은 다음과 같다 :

나 ○○○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에게 제 자신을 충심으로 봉헌하오며,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 모인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 열심히 공경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에 대한 기억을 고무함과 동시에, 예수 고난회의 회칙과 회헌에 따라 정결과 청빈 그리고 순명을 서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은총과 통고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 사부이신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전구하심으로,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봉사에서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수도가족에게 저를 온전히 맡기나이다.

회원들의 이탈과 퇴회

97 . 회원들은 자신이 받은 성소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육성해야 하며, 주로 기도와 경계 그리고 장상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충고와 도움에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8 . 장상들은 어려움과 망설임으로 심히 걱정하고 있는 회원들을 지혜와 사목적 관심을 기우려서 특별히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합당하고 중대한 이유로, 혹은 그것이 종신 서원자로부터 일어난다면, 가장 중대한 이유를 하느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수도회로부터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또 만일 장상들이 수도자를 퇴회시켜야 한다면 공법과 특별법의 제규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도회의 조직

99. 우리 수도회는 참되고 특별한 수도생활 양식으로서 교회로부터 설립되었다.

본회의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회》이며, 약자로는 《C.P.》로 표현하고, 회원들은 《고난회원》으로 부른다. 또한 본회는 교황법에 따른 성직 수도회이다.

100. 성직자이든 평수사이든, 우리 모두는 고난회원으로서 동일한 성소를 받았고, 이 성소에 의하여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공동체에서 생활한다. 우리는 서로를 참으로 동등하게 생각하며, 또한 공동 노력으로, 교회와 본회 안에서 맡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고난에 대한 기억을 공경 토록 노력하며, 우리 회헌에 따라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

101. 본회의 임직은 수도서원의 서약으로 이루어진다.

각 수도자는 수도회로 받아들인 관구나 지역 대리관구에 소속된다.

본회의 모든 회원들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모든 회원들은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나 피선거권은, 대상의 성격에 비추어 다른 조항이 없거나 혹은 공법과 특별법에서 분명히 반대되지 않는한, 종신 서원자에게만 있다.

102. 본회 수도자들의 고유한 복장은 검정색 수단과 허리띠 그리고 고난의 표지로 한다. 수도자들은 자기 봉헌의 표시요 또 가난을 증거하는 자세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관구 총회는 전국 주교회의 지침과 지역의 환경과 관습을 염두에 두고, 그 실행 규범을 결정한다.

103. 본회는, 공법과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관구와 준관구, 지역 대리관구와 지방 공동체들로써 구성된다.

가) 관구는 일반적이고 고유한 관할권으로 관리하는 한분의 장상 아래 있는 여러 지방 공동체들의 연합체이다.

나) 준관구는 총장의 이름으로 일반 관할권을 대리하여 관리하는 한분의 장상 아래 있는 여러 지방 공동체들의 연합체이다.

다) 지역 대리관구는 일반 관할권을 대리하여 관리하는 한분의 장상 아래 있는 수도자들의 집합체이다. 그리

고 총장 혹은 관구장의 권위에 소속되는 여부에 따라 총대리구 또는 관구 대리구가 된다.

라) 지방 공동체는 최소한 3명의 수도자로 구성되며, 원장의 권위 아래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공법과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설립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장상의 허가 없이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기 간의 부재일 경우에는 공법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04. 관구의 설립, 폐지 또는 통합은 총시노드의 동의를 얻는 총회 혹은 총장에게 유보된다.

관구의 변경은 관계되는 관구 당국의 의견을 들은 후,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에게 속한다.

준관구의 설립, 변경 혹은 폐지는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 의 의견을 들은 후,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의 권한에 속한다.

총대리구의 설립 혹은 폐지는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에게 유보된다.

관구 대리구의 설립과 폐지는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의 사전 승인과 함께, 관구 총회 또는 관구 규정에서 결정된 다른 기구에 유보된다.

수도원의 설립과 폐지는, 제 규정을 준수하고, 또 관계되

는 관구 당국의 의견을 들은 후,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이 한다.

수도원의 설립과 폐지를 위한 청원은,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관구장이 총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되, 관구 규정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하여 투표권을 지닌 사람들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5. 각 지방 공동체는 관구, 준관구 혹은 지역 대리관구에 소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도회의 유익에 필요할 때에는, 관구장 혹은 준관구 및 관계 참사회의 의견을 듣고,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이 어떤 수도원들을 자신의 직접 관할권 아래 둘 수 있다.

106. 모든 수도원은 총장이나 관구 총회 혹은 준관구 회의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07.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은 선교 지역을 접수하거나, 분할 혹은 포기해야 할 경우에 성좌와 협의할 권리 갖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총장은 하나 혹은 여러 관구에 위탁할 수 있으되,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구 당국이 총장으로부터 수락한 선교지는 그 지역이
속하는 관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 7 장

수도회의 관리

권위의 기능

108 . 교회 안에 권위가 주어진 것은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받들어 형제적 봉사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본회에서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여, 수도회의 공동선 못지 않게 수도자 개인의 전인적인 성장을 촉진하도록 공동체를 다스려야 한다.

109 . 집단적인 권위와 관할권은, 공법, 회헌 그리고 총규정의 규범에 따라, 총회와 관구총회에 있다.

총참사회와 관구참사회 그리고 수도원 회의 및 행정의 다른 기구는, 공법과 우리의 특별법에서 다른 것을 명시하지 않거나 혹은 선거를 취급한 것이 아니면, 결의 투표가 있다하더라도, 집단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

총장, 관구장 그리고 지방 장상은, 법의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각 참사회나 수도원 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고유한 권위를 행사한다.

법의 규범에 따라 업무를 다룰 때, 장상들은 참사회와 일치를 이루고, 투표권을 행사한다.

110. 고위 장상들은 다음과 같다. 총장, 관구장, 준관구장, 지역 대리 관구장 및 직무상 대리인들, 그리고 관구장과 유사하게 권위를 행사하는 분들이다.

종신서원 후 적어도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고위 장상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그리고 총장의 경우에는 만 40세가 되어야 한다.

111. 고위 장상들은, 성좌로부터 승인받은 양식에 따라,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의무가 있다:

가) 총장은 자신이 선출된 총회 석상에서.

나) 다른 고위 장상들은 임명권자나 승인권자 앞에서 혹은 그 대리자 앞에서.

112.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되는 다수표를 획득한 사람이 선출되고, 그 회의 의장이 선포하며, 공법과 우리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무효 투표도 항상 계산한다.

만일 다른 일에 대한 투표일 경우에는, 유효 투표 중에서만 필요한 다수표를 계산한다.

113. 생동적인 지도와 활기찬 공동체는 기록된 법조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수도자들은 각 단위 행정 체제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책임을 다 한다면, 권위를 행사하는 공동체에서 봉사가 돈 보이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영예와 영광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맡은 우리의 사명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114. 회헌의 어떤 조항을 변경하거나 혹은 추가하기 위하여 성좌에 신청할 때에는, 연이은 2 차례의 총회에서 $\frac{2}{3}$ 의 득표를 요구한다.

첫번째 결의 후, 총장은 변경 또는 추가 내용을 시험하기 위한 임시 칙서를 성좌에 요청한다. 만일 차기 총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확정된 변경과 추가 내용에 대한 청원서를 성좌에 송부할 수 있다.

115. 회헌을 해석하는 권한은 총회에 있고, 총회 밖에서는, 그 해석이 확대 혹은 축소되지 않는한,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에게 있다. 확대 혹은 축소 해석은 성좌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총 규정, 관구와 준관구의 특별법에 관하여 해석하는 권한은 앞서 언급된 본회의 권위에 속한다.

참社会의 동의를 얻는 관구장들은 관구의 특별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되, 관구장과 참사회에 직접 관련되는 규범들은 예외로 한다. 모든 수도자들은 총장과 그 참사회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

116. 관 면.

총장은 각 수도자에게 관면을 줄 수 있고, 또한 회현의 규율적인 규범이나 총규정의 어떤 규범에 대하여 각 수도원이나 준관구 그리고 관구에 대하여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관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은 회의와 관구 총회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관면을 줄 수 있다.

다른 고위 장상들은 자기에게 속하는 각 수도자 그리고 그들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도자들에게 관면을 줄 수 있다. 참社会의 동의를 얻는, 이 장상들은, 각각의 경우가 발생 할 때마다, 우리 법령의 규율적 규범에 대하여 개별적인 수도원에 관면을 줄 수 있다.

지방 장상은, 규율적인 문제에 한하여 각 수도자에게 관면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에도 줄 수 있다.

117. 우리 성당이나 소성당에서 회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허가는 고위 장상 혹은 지방 장상에게 요청한다.

118. 우리 수도회의 회원들이 신앙과 윤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저술하고 출판하려면, 교회 권위의 승인 이외에도, 총장이나 관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 공동체

119. 본회의 생명력은 그 주요 단위인 지방 공동체에서 흘러나온다. 여기서 고난회원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공동책임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각 수도자는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자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수동적인 목인에 그쳐서는 안된다.

장상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책임진 직무와 부과된 일에 대하여 능동적이며 책임있는 순종으로써 협력하도록 형제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장상들이 수도자의 말을 기꺼이 듣고, 또 수도회와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힘을 모으도록 촉구하는 것은, 행사하고 있는 그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¹⁰⁷⁾

120. 장상으로 임명된 수도자는 자기 공동체 위에 혹은 밖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도 또한 자기 형제들 중의 하나이다. 공동체의 선이 넓은 의미에서 장상들에게 달려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직무를 봉사로 여겨야 한다. 장상은 봉사하는 정신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권위를 행사하므로써, 하느님이 즐기시는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¹⁰⁸⁾

107. 수도 14.

108. 수도 14.

인격을 존중하여 수도자를 지도하므로써, 각 수도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강함과 관용을 항상 겸비해야 한다.

형제들에 대한 그의 봉사는 사목적임과 동시에 협조적이어야 한다. 사목자로서, 장상은 하느님의 가족을 살아있는 하나의 형제애로 연결시키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생기를 주는 사람으로서, 장상은 활동 목표와 방침을 강구하며, 형제들이 진정한 공동체 생활과 기도생활 그리고 사도적 활동에 임하도록 해야한다.¹⁰⁹⁾

121.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방 공동체는 자기 지역 내에서 자기 생활과 맡은바 사명에 필요한 자유를 향유한다. 즉, 형제적인 일치와 대화로써 다른 공동체와 유대를 맺으며, 관구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거기서 자체의 번영을 위한 도움과 영감 그리고 힘을 얻는다.

사실, 관구가 제공하는 모든 것은 전 회원을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은 공통적이다.

109. 관계 13.

관구

122. 관구의 최고 권위와 지도 기관은 관구 총회이다.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많은 결정권이 적절하게 관구 권위에 위임되었으므로, 지역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본회의 고유한 사명 내에서 정당한 자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123. 관구 총회는 관구의 생활을 검토하고, 시대의 당면 문제에 대처하며, 미래의 합당한 대책을 수립하고, 규범과 법령을 만들며, 선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집된다.

그리고 관구 총회는 관리상의 집행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나, 명확히 결정되는 지도 규범이란 입장에서, 이루어진 일을 평가하는 책임을 지닌다.

124. 관구장은 공동체들을 지도 육성하고, 진실한 형제적 일치를 이루도록 형제들을 결합시켜야 한다.

관구장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하며, 여러 다른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

또한 참사회와 다른 기구의 협조를 얻으면 공동체들의 생활양식과 성실성을 올바르고 책임성있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25. 관구장은 관구 수도자들을 진심으로 격정하여, 각 개인과 관구의 선익을 위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관구장은 목표를 설정하고, 가치를 식별하며, 고난회원의 순수한 생활을 고취시키는 동기를 부여 하므로써 자신의 직무를 완수할 것이다.

관구 발전의 일차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관구장은 관구의 효과적인 활동 지침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시키고, 총본부나 관구 당국이 제시하는 계획을 실행, 감독하며, 관구와 수도회 전체와의 긴밀한 일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총 회

126. 본회의 최고 권위는 총회에 있고, 법의 규범에 따라 완전한 관할권을 향유한다.

127. 총회는 입법 기능과 선거 실시를 위하여 소집되며, 자체의 공동체적인 목적과 교회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 본회의 충실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소집된다. 따라서 총회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시대의 정 표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식별하므로써,

끊임없는 쇄신과 적응 과업에서 활기찬 힘이 치솟게 한다.

나) 본회의 올바른 성격을 함양하므로써, 우리 수도자들이 어디서나 드러낼 수 있게 한다.

다) 수도회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의 공동체 생활과 사도적 활동에 관한 공동 목표를 명확히 한다.

라) 연대성을 촉진하고 일치를 보전하되 획일성을 배제한다.

마) 총본부가 시행한 일을 평가하며, 전년도 총회 및 총시노느의 계획 집행을 평가한다. 그러나 총장과 그 협력자들에게 속하는 관리권의 방법은 재한하지 않아야 한다.

바) 총장과 그 참사위원 선거.

128. 총회는 국제 공동체의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총괄적인 규범과 방향을 제시하되, 다양한 문화와 지역의 요구에 따라 시행 방법은 관구에 유보한다.

129. 총회는 6년마다 개최한다.

총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회를 주재하는 총장, 전 총장들, 총 참사위원들, 본부 사무국장, 총장 비서, 선교지 총장 비서, 총본부 경리, 관구장들 그리고 준 관구장들이다.

만일 관구장이나 준관구장의 유고 시에는 그의 제1 참사위원이 대리한다. 만일 제1 참사위원 역시 유고 시에는 관

구 참사회에서 다른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130. 총규정의 규범에 따라 각 관구에서 선출된 1인 혹은 2인 이상의 대표자가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총규정은 다른 그룹, 지역 혹은 본회의 다른 기구 대표자 선임을 위한 규범을 규정할 수 있다. 만일 대표자의 유고 시에는, 그의 차점자로 대체할 것이다.

총장과 참사회

131. 수도회를 대표하는 수도자로서 총장은, 공법과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본회의 모든 관구, 준관구, 지역 대리관구, 수도원 그리고 수도자와 재산에 관하여 일반 및 고유한 관할권을 갖는다.

총장은 6년마다 선출하며, 1회에 한하여 즉시 재선할 수 있다.

132. 선거인들은,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깊히 생각하여, 본회를 지도하는데 보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33. 총장 선출은 $\frac{2}{3}$ 의 득표를 요구한다. 만일 5차 투표에서도 선출이 되지 않으면. 다음 투표에서 다수표를 획득

한 형제가 선출된다.

134. 총장은 본회 전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므로, 모든 집회와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만일, 예외적인 경우로, 총장이 어느 관구에서 자기 관할권을 직접 행사하면, 관구장이 자기 참사회에 요청하는 바와 같이, 총장은 총참사회의 의견과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35. 총회는, 총규정의 규범에 따라, 적어도 4명의 참사위원을 선출한다. 그들이 총참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사업에서 총장을 보좌한다.

총장은 자기 참사회에 본회의 현황을 확실히 알게 하고, 본회의 문제와 발전에 대하여 그들과 자주 토의한다.

총장은 공법과 특별법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참사회의 결의 투표나 자문 투표를 요청한다.

136. 총장 참사위원들의 선출은 절대 다수표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5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지 못하면, 5차 투표의 최고 득표자 2명을 후보자로하여 선출하고,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사람이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6차 투표에서, 후보자들이 같은 수효를 득표할 경우에는,

서원 순서대로, 또 서원 연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참사 위원들의 임기는 6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즉시 재선할 수 있다.

137. 총장과 총장 참사위원들은 선출되고 수락하는 그 자체로 직무를 맡는다.

참사 위원의 정수가 선출된 후, 총회는 참사위원 선거와 동일한 규범에 따라 그들 중의 1명을 제1 참사위원으로 선출한다. 무슨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제1 참사위원이 그를 대행한다.

만일 총장의 직무가 공백이 될 때에는, 제1 참사위원이 차기 총회 때까지 그 직을 대행하되, 1년 이내에 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138. 총장은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부 사무국장, 총장 비서, 총본부 경리, 선교지 총장 비서 그리고 본부 청원인을 임명한다.

이외에, 총장은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직속 수도원의 원장을 임명한다.

139. 만일 총장 참사위원이 직무를 떠나면, 총장, 참사위

원 그리고 본부 사무국장이 차기 총회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할 다른 사람을 공동으로 선출한다.

140 . 총규정은 총장 참사회의 유효한 활동에 필요한 『정족수』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교황청의 관리가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총장 참사위원을 대리하는 권한을 선언한다.

141 . 총장은 수도회에 대한 사목적인 봉사의 일환으로, 적어도 임기 중에 한번은 개인적으로 공식 방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총장이 참사위원이나 기타 다른 형제에게 위임 할 수 있으나, 방문한 형제는 방문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총장과 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 총장의 주요 직무는, 수도회의 영감에 충실하며, 교회 권위의 요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반법, 회헌 그리고 총회의 규범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또한 총장은, 적당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수도회의 영적, 교리적 및 문화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총장은 우리 시대의 보다 긴박한 문제들은 깊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도적 활동 계획을 조정하며, 공동체 생활과 우리 수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끊임없는 쇄

신을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시, 총장은 우리들의 공동 성소에 따라, 관구간의 영적 일치와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143. 총장은 관구와의 끊임없는 교류를 가져야 하고, 그들의 문제점과 어려운 점,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익히 알고 있어야 하며, 형제적인 이해와 사랑 그리고 포용으로써 그들을 도와야 한다.

본회 전반에 대한 전망은 관구를 도움에 있어서 그에게 유익할 것이다. 총장은 수도회의 목표에 대하여 명확히 지도해야 하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없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

총시노드

144. 총시노드는 총장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 활동하는 특별 위원회이다.

총시노드는 총회의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시행을 평가한다. 나아가, 수도회의 꾸준한 쇄신을 위하여 적당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더욱 합당한 방법들을 일치의 정신으로 제안한다. 또한 다른 관구들에 대한 배려를 수도회의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의식을 고취시킨다.

145. 총장은 다음과 같은 수도회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시노드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가) 임시 총회를 소집할 때 :

나) 총규정에서 일반 관면을 허가할 때 :

다) 관구들의 설립, 폐지 및 통합을 승인할 때 .

146. 총장은 2년마다 시노드를 소집하며, 또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적당한 때 라고 판단되거나 혹은 다수의 관구장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시노드의 위원들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문해야 하고, 토의의 다른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자유이다.

147. 총장은 《직무상》 시노드의 의장이다. 다른 위원들은 《직무상》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이다.

만일 관구장이나 준관구장이 시노드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제 1 참사위원이 참석한다. 만일 제 1 참사위원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이면, 관구 참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관구의 관리

148. 각 관구의 최고 권위인, 관구 총회는 공법과 특별법

의 규범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집단체이다.

회헌에서 관구 권위나 혹은 관구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무엇을 위탁할 때는, 관구 총회가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관구 총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관구장이 해야한다. 관구 총회는 다른 형제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149. 관구 총회의 소집과 진행은 다음의 규범을 따른다 :

가) 각 관구는 총회의 회수를 결정하되, 3년 이내 혹은 6년을 초과해서는 않된다.

나) 총회는 관구장이 소집하되, 소집 일자를 미리 총장과 협의한 후, 관구내의 모든 수도원에 회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관구장과 관구 참사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관구 총회에 참석한다. 또한 총회는 당연직 혹은 다른 이유로 참석할 다른 위원들은 결정한다. 그러나 대표자의 수효가 당연직 위원들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라) 관구 총회는 회기가 진행되는 기간에 위원들을 교체 할 수 없다.

마) 투표권을 갖는, 관구 총회의 의장은 총장 혹은 그의 대리자이다.

바) 관구 총회에서 만들어지는 규범과 결의는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0. 각 관구는 관구 총회의 대표자와 대리자 선출 방법을 규정한다.

관구의 모든 회원들은 대표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되, 피선거권은 종신 서원자만 갖는다.

151. 각 관구는 관구 총회에서 결정된 방법으로 선출되고 총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관구장이 관장해야 한다. 관구장은 관구 내의 모든 수도원, 인적 자원 그리고 재산에 관하여 교회법상의 일반 및 특별 관할권을 갖는다.

관구장의 임기는 3년 미만이 나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관구 총회가 규정한 규범에 따라, 재선될 수 있다. 최종 선거인 3번째 선거에서는 첫번째 3번의 검표에서 적어도 투표자의 $\frac{2}{3}$ 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출 될 수 없다.

152. 관구장은, 자신이 직접 행하거나 혹은 위임하든지, 매년 관구를 방문해야 한다. 방문 후에는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참사위원들은 관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출되고,

그에게 직접 소속된다.

참사위원들은 수도회와 관구의 공법과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문 투표권과 결의 투표권을 갖는다.

154. 관구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참사위원의 수효와 관구 관리에서 부과될 직무, 참사 위원의 선출 방법, 참사위원들의 서열 및 직무 기간.

나) 예정 기간 전에 직무를 사임하는 참사위원을 대리하는 방법.

다) 관구장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그 직무를 떠났을 경우, 누가 관구장을 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155. 총장 혹은 그의 대리자가 관구장과 참사위원들의 직책을 확인한다.

156. 관구 총회는 관구 관리에 필요한 다른 주요 직무를 규정하며, 해당 직무의 수행자 선출 방법을 결정한다.

157.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총회의 의장은 특별한 어떤 사항을 자신과 참사회에 유보하거나, 총회를 폐지하거나 혹은 나머지 일을 자신과 참사회에 유

보시키는 권리を持つ다. 그러나 항상 159 항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158. 특별한 경우에, 만일 중대한 이유가 이를 필요로 한다면, $\frac{2}{3}$ 의 찬성 투표로 표현되는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이 관구장의 선출이나 관구의 다른 모든 선거와 임명을 자신과 자신의 참사회에 유보할 수 있으나, 항상 159 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만일 참사회의 위원들이 불참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서면으로 투표해야 한다.

159. 관구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의 대표자와 대리자 선출 방법을 결정한다.

준 관구와 지역 대리관구

160. 준관구는 준관구장이, 지역 대리관구는 지역 대리관구장이 관장한다. 이들은 준관구 혹은 지역 대리관구의 인적 자원, 수도원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관할 대행권을 행사하며, 관구장이 관구 관리에서 갖는 동일한 권리와 권한을 갖되, 고위 장상이 자신에게 유보한 사항은 예외로 한

다. 그들은 최소한 2명의 참사위원들을 보유해야 한다.

161. 준관구 회의는 총장의 동의를 얻어 준관구장이 정한 시기에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직무상》 투표권을 갖는 형제들은 준관구장과 참사위원들이다. 총장 혹은 총장 대리가 본 회의를 주재하고, 투표권을 지니며, 선출을 확인한다.

162. 지역 대리관구의 회의는 총장 혹은 소속 관구장의 동의를 얻어 지역 대리관구장이 정한 시기에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직무상》 투표권을 갖는 형제들은 지역대리관구장과 참사위원들, 총장이나 소속관구장 또는 그의 대리자들이다.

총장 대리구에서는 총장 혹은 그 대리자가 투표권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며, 선출을 확인한다.

관구 대리구에서는 관구장 혹은 그 대리자가 투표권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며, 선출을 확인한다. 만일 총장이 참석할 경우에는, 총장이 투표권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되, 관구장이나 그 대리자의 권리가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163. 준관구가 규범을 규정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

해서는 총장과 그 참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회의의 회수, 구성원, 직무 및 대표자와 그 대리자의 선출방법.

나) 준관구장과 참사위원들의 선출 방법, 3년 미만이거나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그들의 임기, 그리고 재선 여부.

다) 참사위원들의 서열과 준관구장의 승계, 혹은 대행 방법.

지역 대리관구에서 이에 대한 규범들은 총장이나 혹은 소속되는 관구 권위로부터 결정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지역 대리관구는, 명백한 반대 규정이 없는한, 소속 관구에서 유효한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64. 관구와 수도원 관리에 관한 것 이외의 경우에는 공법과 특별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 공동체

165. 각 수도원은 원장이 관리하고, 수도원의 인적 자원과 재산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관구 총회는 지방 장상의 선출 혹은 임명 그리고 그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 원장이, 만일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관구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일 관구장으로부터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합당한 자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 원장들은 1회에 한하여 동일 수도원에서 재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총장이 이 규범을 사면할 수 있다.

각 지방 공동체에는 통상적으로 원장과 구분되는 대리자와 경리가 있어야 한다.

166.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 혹은 참사회의 동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는 관구장은,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지방 원장의 지도를 조심스럽게 검토한 연후에, 그 직책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167. 수도원 회의는 수도원의 장상 참사회 역할을 담당한다.

관구 권위는 수도원 회의의 회수와 구성 그리고 자문 투표와 결의 투표를 요하는 대상에 관한 규범을 제정한다.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관구장은 공동체에 통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도원 회의에서 결정된 것과 다른 것을 부과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산

168. 청빈의 실천은 표리가 없어야 하고 확실해야 한다; 공동체와 관구 그리고 수도회 안에서 빛나야 한다; 온갖 형태의 사치, 탐욕 그리고 재산의 축적은 피해야 하며,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양식에 꼭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169. 공법과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재산을 얻고 소유하며 양도하고 관리하는 권리는 수도회, 관구, 준관구, 지역 대리관구 및 법인 자격이 있는 수도원이 갖는다. 만일 관구 총회가 수도자의 부양과 사도직을 고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구가 부동산과 고정 수입을 보유할 수 있으나, 항상 청빈의 요구는 지켜야 한다.

준관구와 지역 대리관구 역시 같은 권한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70. 경제의 일차적인 재원은 모든 수도자들의 부지런한 노동이다. 우리는 청빈을 사는 한가지 방법으로 우리 노동의 댓가를 받는다. 될수 있으면, 우리는 직무의 경제적 보

상에 대해 초연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진지한 자세를 표현하여야 한다.

171. 우리는 은인들이 제공하는 도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분들이 영신적으로 우리 수도회와 일치되어 있으며, 우리들의 사도적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우리의 감사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172. 수도회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는 수도자들의 부양과 사도직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관리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출자가 사회적 상황에 합당한지 항상 주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들은 경상비 지출에 필요한 수입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수도회의 건전한 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특별 경비를 지혜롭게 준비하여야 한다.

173.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직책에 필요한 마땅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각 계층, 즉 총본부, 관구, 지방 공동체 단위로, 공법과 특별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한, 자기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갖는다.

174. 참사회의 결의 투표를 거친 관구장 혹은 그 대리자는, 공법의 제규정을 지키고, 또 참사회와 함께 총장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 양도하며, 현금을 차용하거나 대부하고, 또한 자기 관구 내에서, 수도회의 대표자로서, 관리에 필요한 것을 변경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175.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각 수도원은 청빈을 증거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모든 재산과 또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재원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과 관심을 요구한다. 재산의 사용에서 낭비나 부주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수도자의 청빈 또한 거스린다.

각 관구는 자기 수도원과 재정 문제에 대한 공동책임 정신을 수도자들에게 고취시켜야 한다.

176. 수도회의 모든 수도원은 사랑의 끈으로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총장이나 관구장은, 각각 참사회의 동의를 얻고, 또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토의한 후, 지혜와 필요성 그리고 사람이 제시하는 바를 따라, 총장은 수도회의 재산 일부를, 혹은 관구장은 관구의 재산을 다른 수도원을 원조하기 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77. 모든 수도원은, 관계되는 권위로부터 제정된 규범에 따라, 관구 관리를 보조해야 한다.

이와같이, 모든 관구는 총본부의 관리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결 론

178.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회의 회헌이다. 본 회헌은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회칙을 해석하고,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작성되었다.

교회의 권위로부터 승인받은, 본 회헌은 고난회에서 우리의 봉현생활을 하기 위한 규범이자 안전한 지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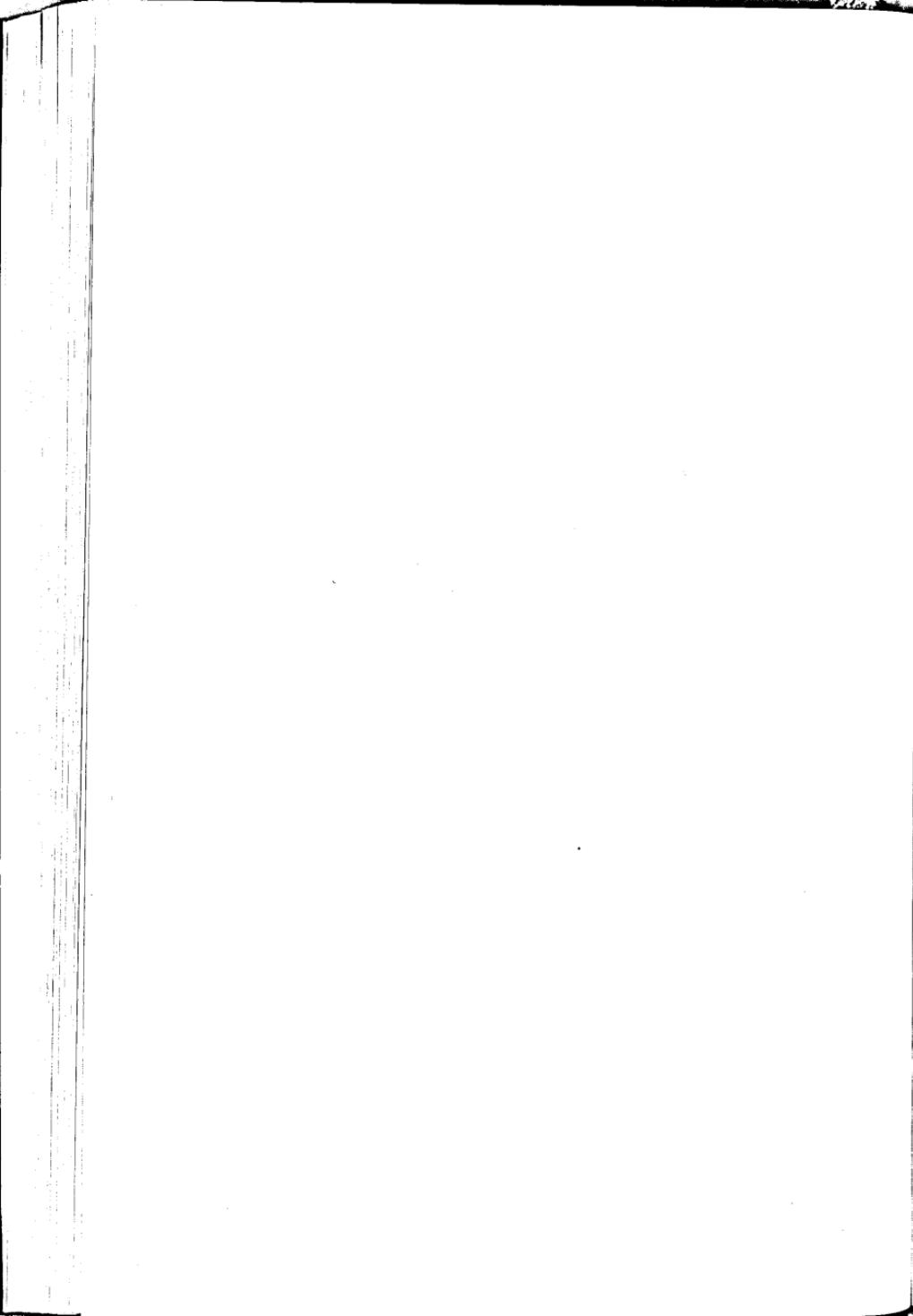
회헌 맨끝에서, 우리는, 전에 임종하실 무렵에 무엇 보다도 형제적 사랑과 기도 정신, 고독과 청빈 정신 그리고 자모이신 성교회에 대한 효심으로 수도회가 하느님과 만민 앞에 태양처럼 빛나게 하라시던¹¹⁰⁾ 우리 창설자의 권고 말씀을 상기한 바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자리하소서. 아멘.

110. 진행 III, 491 ~ 493 면.

내용 색인

(숫자는 조항의 번호)



刁

가난한 사람—〈예수의 가난한 사람들〉, 1—~와 우리의 나눔, 3, 10, 11, 13, 14—우리의 기도, 38—~들과 진정으로 함께 자리한다, 57—우리의 복음화, 70.

감사—감사의 제사에서, 42 ~ 45.

감사의 제사—42, 43, 44.

결정—최종 결정에 대하여 책임있는 장상, 23—토의 후에 받아들임, 27—관면, 116—모든 결정에의 참여, 119—관구 권위에 위임된, 122—관구 총회 밖의, 148.

경리, 수도원—165.

경리, 총본부—직무상의 총회 위원, 129 → 참사회의 동의로 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138.

고난의 표지—수도복의 요소, 102.

고난회—교회와, 2, 6, 108—수도원 간의 나눔, 11—재화의 획득, 12—가난한 사람들과, 13, 14—지방 공동체와, 32—창설자의 표양으로 감도받은, 62—고난회의 사도적 목표와 창의력, 68—말씀의 봉사와, 70—지방 교회의 사목적 요구, 73—선교 지역의 확대, 75—생활과 정신의 양성, 78—활성화에 대한 공동 책임, 79, 80—수련기는 본회의 생활양식을 체험한다, 89—총회의 직무, 127—총장이 본회의 영적, 교리적, 문화적

성장을 촉진시킨다, 142.

고난회원의 영성—양성에서, 81, 86, 89.

고독—근본적인 영감에서, 1—고난회원 생활에서 지니는 가치, 54.

고령자—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30—젊은 형제들과, 80.

고통—~의 원인들 식별하고 제거하도록, 3—세상에서, 13—정결은~에 민감하게 한다, 18—우리의 기도와, 38—그리스도의, 50—신비체의—65.

공동선—108.

공동책임—자유와 완성의 길, 22—훌륭한 관리의 조건, 113—공동책임의 법적인 요구, 119—경제 문제에서, 175.

공동체—119～121 ; 165～167—첫 공동체의 명칭, 1—사도적, 2—회헌에 의하여 규제된다, 4—교회 안에서 구원의 누룩, 6—사랑의, 8—현세 재물에서 이탈한, 10—초대 교회의 모범, 11—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성을 드러낸다, 13—그리스도에 의하여 양육되는, 17—공동체 내의 우애, 19—식별력, 21—공동체 내의 대화, 23—공동체의 관계성, 25～36—시민 공동체와의 관계, 35—가장 큰 은인은 부모, 32—기도에서, 37, 38, 51—기도에 의하여 영향받는, 40—미사성제에서 하느님께 봉헌한다, 42—공동체의 중심인 감사의 제사, 43—공동체의 기도를 그리스도께 합한다, 45—성서 독

서, 47 — 참회 행위로 응답한다, 58 — 공동 참회 예식을 거행한다, 60 — 사도직에 대한 영향, 67 — 전 교회에 대한 증거, 73 — 교회 일치 운동에 참여한다, 74 — 사도직을 평가한다, 76 — 기도정신과 형제적 정신이 끊어핀다, 80 — 젊은이들, 81 — 수련 전기 양성에서 체험한다, 88 — 수도회의 구성 요소, 103 — 관구, 준관구 혹은 지역 대리 관구에 속한다, 105, 총장의 직접 관할권에 속하는, 105 —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106 — 공동체의 올바른 관리, 108 — 기록된 법조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113 — 수도회의 기본 단위, 119 — 공동체의 원장, 120, 165 — 법적 규범, 121, 165 ~ 167 — 공동체의 쇄신을 촉구하는 총장, 142 — 청빈, 168.

관구 — 122 ~ 125 — ~내의 증거로써 청빈, 13 — ~내의 교류, 32 — 선교사적 사도직, 75 — 사도적 활동의 평가, 76 — 양성 계획서, 85. — 수도회와 서품 승인을 위하여 자문을 구할 기구를 결정한다, 93 — ~의 소속 회원, 101 — 수도회는 관구로 구성한다, 103 — 한 분의 장상 아래 있는 여러 공동체들의 연합체, 103 (가) — 설립, 폐지, 통합, 변경, 104 — 각 공동체는 ~에 속한다, 105 — 선교지를 맡는다, 107 —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관구장이 ~의 법을 해석한다, 115 — 회헌과 규범에 대한 관면, 116 — 지방 공동체, 121 — 관구 총회, 122, 148 —

관구장, 125—총회의 총괄적인 규범과 방향을 다양한 문화와 지역의 요구에 따라 시행 방법을 강구한다, 128—대표자를 총회에 보낸다, 130—~내에서 일반 및 고유한 관할권을 갖는다, 131—총장이 ~내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134—총장이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142—총장이 ~와의 교류를 유지한다, 143—총 시노드가 관구간의 관심을 요구한다, 144—~의 설립, 폐지, 통합에는 시노드의 동의가 요구된다 145 (다)—관구 총회는 ~내에서 최고 권위, 148—관구 총회 소집 시기를 결정한다, 149 (가)—관구 총회의 대표자 선출 방법 결정, 150—관구장이 관리한다, 151—~의 연례 방문, 152—관구 총회는 관구 관리에서 참사위원들의 의무를 결정한다, 154 (가)—관구 총회는 관구 관리에서 부과될 다른 직무를 결정한다, 156—총장은 선거와 임명을 유보할 수 있다, 158—준 관구와 지역 대리관구, 160—공법과 특별법을 지킨다, 164—청빈의 실천 168—재산, 169, 175, 176—재산의 관리자, 175—총본부 관리에 기여한다, 177.

관구 내의 직책—관구 총회가 결정한다, 156.

관구장—고위장상, 110—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해석한다, 115—지방 공동체를 지도하고 활성화 시킨다, 124—일차적인 책임, 125—참社会의 동의를 얻어 관구 총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한다, 148—회람

으로 관구 총회를 소집한다, 149 (나) - 관구 총회의 당연직 위원, 149 (다) - 관구를 관리한다, 151 - 매년 수도원을 방문한다, 152 - 총장에게 방문 보고서를 보낸다, 152 - 참사위원들의 보좌를 받는다, 153 -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떠날 경우, 대리자 문제를 결정한다, 154 (다) - 총장이나 그 대리자에 의하여 직무를 확인 받는다, 155 - 선출이 총장에게 유보될 수 있다, 158 - 지역 대리 관구 회의를 동의한다, 162 - 지역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를 확인 한다, 162 - 지방 원장이 선출되는 경우, 그 직책을 확인 한다, 165 -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 원장을 직책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166 - 수도원 회의가 결정한 것보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167 -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76.

관구 총회 - 122 ~ 123 ; 148 ~ 151 - 성무일과의 공동 거행, 46 - 절제시의 참회 양식을 결정한다, 59 - 수련 기의 구비조건, 계획서, 교육, 기간을 결정한다, 90 - 종신 부제직의 규범을 결정한다, 94 - 유기 서원의 연장, 95 - 수도복의 규정, 102 - 관구 대리구의 설립, 104 - 수도원의 권리와 책임, 109 - 총장에 의하여 관면을 받게 되는 결정사항과 규율, 116 - 관구의 최고 권위와 지도 기관, 122 - 기능과 규범, 123, 149 - 대표자와 대리자의 선출, 150 - 관구장의 선출, 151 -

참사위원의 수효, 의무를 결정한다. 154 (가) —임기 도중의 관구장과 참사위원의 교체, 154 (나, 다)—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의 대표자와 대리자 선출 방법, 159 —지방 원장의 선출이나 임명에 관한 규범, 165 —고정수입의 필요성, 169 —기타, 권위, 관구장, 관구의 관리, 관구 등을 보시오.

관리, 관구의—수도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177.

관리, 재산의— 168 ~ 172 —이에 대한 책임, 172.

관리, 총본부의—관구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177.

관면, 단식과 절제에서, 59 —관면주는 권한, 116 —총 규정의 관면, 145 (나) —지방 원장 선출에서, 165.

관상—고난에 대한, 5, 38, 39, 56 —로사리오의 신비에 대한 53 —공동체 내의, 54, 55.

교구장, 지방—~와 협력, 34.

교황—수도회의 최고 장상, 24 —선교 지역, 107 —회헌의 해석, 115.

교회—수도회의 승인, 2, 8, 99 —사명에 참여한다, 6, 62, 69, 77 —함께 나누는 생활, 11 —독신생활에 의하여 부요하게 된, 18 —지방, 33 —각 공동체는 교회의 일부, 34 —공동체는 교회의 기도에 참여한다, 38, 45 —우리 기도는 교회의 기도에서 최상의 표시를 발견한다, 41 —하느님의 말씀은 그 가르침에 의하여 알려진다, 48 —

화해의 성사, 60 — 생명의 말씀, 63 — 우리의 사명, 64 — 받은 선물을 나누는 기회, 68 —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여 지도 받는다 72, 사목적 요구에 참여한다, 73 — 교회 일치 운동, 74 — 선교사적 노력을 크게 고취시킨다, 75 — 교도권, 78 — 교회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80 — 교회에 봉사하는 우리의 여러 임무, 100 — 신적 권위, 108 — 총장은 교회의 요구에 응답한다, 142.

교회법상의 직무—승인, 93.

교회, 지방—지방 교회에 대한 배려, 34 — 우리의 사도적 활동, 73.

구원—공동체는 누룩이 되어야, 6 — ~에 협력한다, 38 — 사도직, 62 — 우리 사명의 최종 목표, 113.

권위, 관구의—개인 재산의 소유권 포기에 관한 규범, 15 — 망자를 위한 기도를 결정한다, 31 — 관구간의 지원, 32 — 외부인이 수도원을 이용하는 한계, 34 — 관구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104 — 수도원의 설립과 폐지, 104 — 선교지, 107 — 관구 총회, 122 — 관구장, 125 — 지역 대리관구의 규범, 163 — 수도원의 회의, 167.

권위—기능, 108 ~ 118 — 교회 권리가 수도회를 승인한다, 2 — 재화의 사용과 처분, 14 — 합법적인 권리 아래서 회헌을 실행한다, 20 — 지방 장상, 23, 119, 120 — 순명,

24 - 양성에서, 83 - 지방 장상의, 103 (라) -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108 - 총회와 관구 총회의 집단적 권위, 109 - 공동체 내에서의 행사, 113 - 총회의, 126.

권위, 교회의 - 신앙과 윤리에 관한 책의 저술을 승인한다,
118.

권위, 지방의 -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23 - 약화되어어서는 안된다, 119 - 행사, 120.

권위, 총본부의 - 망자를 위한 기도, 31 - 관구간의 지원,
32 - 선교사적 활동을 격려한다, 75 - 관구 내의, 122
- 이외에도 총장, 총 참사회 등등을 보시오.

규율 - 규율적 규범에서의 관련, 116 - 관구 총회, 123,
149.

그리스도의 고난 - 하느님 사랑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묘한 사업, 1 - 고난의 복음, 2 - 이 세상 안에서 기여한다, 3 - ~에 대한 우리의 봉헌, 5, 6 - 자주 기도 중에 마음 속에 새긴다, 50 - 회개, 참회, 56 - 우리 사도직, 62 - 사도적 활동에서, 64, 65, 66 - 양성에서, 86 - 수도회의 명칭, 99 - 또한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등등을 보시오.

기쁨—동시대인들의 기쁨을 나눈다, 3, 18, 63 —우리 생활을 통하여 선포한다, 8 —공동체에서 생활, 28 —감사의 제사에서, 43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64 —성소에 매혹되게 한다, 79.

□

대중 매체—잠심의 정신으로 사용한다, 55.

대표자—총회에 파견하는, 130, 159 —관구 총회에 파견하는, 149, 150 —준관구 회의에 파견하는, 163, 총장의, 161, 162.

대화—장상의 임무, 23 — 공동체 생활에서, 27 — 하느님과 함께, 37 —양성에서, 83 —다른 공동체와, 121.

동등성—수도자들 사이의, 26, 100, 108.

□

마리아, 복되신 동정—복음적 권고를 따르도록 우리를 감도하시는, 8 —정결의 모범과 도움, 19 —~를 공경한다, 53.

만남—공동체의 관계성을 도모한다, 27—수도원 간의, 32

—사회적인 만남, 55—총장과 관구간의, 143.

말씀의 봉사—최고의 직무, 63.

망자—항상 기억해야 한다, 31—망자를 위한 기도, 31.

망자를 위한 기도—총본부와 관구 권위가 결정한다, 31.

목상—개인, 39—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49—공동
기도의 불가분의 요소, 49—그리스도의 고난, 50—다
양한 형태의, 51—서로를 격려한다, 52—가르침, 66.

B

빠스카 신비—우리 생활의 중심, 65.

방문—총장의, 141—관교장의, 152.

보조성의 원리—관구와 수도회에서, 121—또한 지방분권
과 관리를 보시오.

복음—복음을 선포한다, 1, 2—우리 생활의 기준, 4, 40, 82
—진복팔단, 9—청빈을 감도한다, 10—~에의 충실
성, 18—가치, 20—순명, 22—순명을 비춘다, 23—
~에 따른 생활, 24—우리의 본보기, 27—~의 설교, 74.

복음적 권고—7~9—청빈의 필요성, 1—고난의 빛으로,
6, 9—청빈, 정결, 순명, 서원, 서약을 보시오.

복음화—우리의 사명, 3, 70, 75, 80.

본당—본당 선교, 70 —총장과 참사회의 동의로 받아들인다, 73.

본부 사무국장—직무상 총회 위원, 129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138 —만일 직책이 공석이 되면, 새로운 총 참사위원을 선거한다, 139.

본부 청원인—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이 임명한다, 138.
봉사—청빈은 ~할 자세를 갖추게 한다, 10 —독신, 18 —복음적 순명, 21 —공동체에서, 27 —사도적, 67, 68.
84 —권위, 108, 120.

봉쇄구역—고위 장상이 정한다, 34.

부모—가장 큰 은인, 36.

부제직—승인, 93 —종신, 94.

부제직과 사제직의 승품—승인, 93.

병든 형제들—특별한 관심을 표현해야, 29.

人

사도직—62 ~ 76 —고난을 선포하는, 2, 11, 18, 22 —우리의 참여, 3 —고난에서 생활과 사도직의 일치, 5 —고령자의, 30 —정열, 34 —주민들에게 유익한, 35 —고독, 54 —현대의 대중매체 이용, 55 —희생, 57 —교회의 사도직에 동참한다, 62 —각자의 재능과 환경에 어울

리는, 63 - 공동체 생활에서 흘러나온다, 67 - 특별하고 중심적인, 70 - 크리스챤 신앙을 상실한 집단, 71 -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72 - 우리의 선교사적인 성격과, 75 - 각 관구와 공동체의 평가에 대한 책임, 76 - 양성, 78, 81, 85 - 고도의 적응력을 요구한다, 84, 85 - 총장이 승인하는 계획서, 85 - 인재와 성소, 87 - 수련기에서, 89, 92 - 장상은 사도적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120 - 고정수입, 169 - 재원, 172 - 이외에도 사명, 직무,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 사목 활동, 교회 일치운동 등을 보시오.

사랑, 형제적-인간적 사랑의 의미를 증거한다, 17 - 순종과 사랑, 22 - 표현되어야 할 장상의, 23 - 공동체 생활을 활성화 시킨다, 25 - 실천적인 적용, 28 - 공동 기도로 함양된다, 46 - 양성 수도원에서, 80 - 양성 중인 후보자들로부터, 83 - 훌륭한 관리의 결과, 120 - 현세 재화에서 연대성을, 176 .

상소권-총장에게, 115 .

서원, 수도- 93, 95, 96 - 수도회의 입적, 101 .

선거-총회에서, 131, 132, 133, 135, 136, 137 - 총장이 자신과 참사회에 유보하는 선거, 158 - 지방 원장, 165 - 기타, 선거에 관한 직책을 보시오.

선교지-총장이 받아들인다, 107 , 관구에 위탁한다, 107 .

선교지 총장 비서－직무상 총회 위원, 129－참사회의 동의
를 얻는 총장이 임명한다, 138.

설교－끊임없이 십자가의 말씀을, 1－고난의 복음을,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63－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
스도, 64－순회 설교, 70－십자가의 메시지, 73－기
쁜 소식, 74－수도자에게 설교하는 허가, 117.

성령－창설자, 2－우리를 인도하시는, 8, 39－우리 안에
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26－우리 마음으로 보내신다,
42－수도회는 ~과 협력한다, 77－관리는 성령에게
민감해야, 108－성령을 통하여 성부께, 120－관구장
은 ~의 역사하심에 민감여야, 124－총회는 성령의 역
사하심을 식별해야, 127.

성무일과－ 45, 46.

성사－말씀의 봉사, 63.

성서－영적 독서에서, 47－양성에서, 78.

성서 독서－ 47, 48.

성세성사－수도자적 축성의 기초, 7.

성소－고난회원의 성소, 1～4, 100－다양한 형태로, 16
－공동체에, 25－근본적인 성격을 지켜져야, 32－고
난, 65－양성, 80, 81, 83, 88, 89－계발, 87－육성, 97.

세상－~안에 고난이 계속된다, 3－하느님의 권능과, 5－
우리의 특별 서원과, 6－하느님의 구원 방법을 ~에,

8 -~에서 재화의 불공정한 분배, 13 -~에서 독신생활, 17 -권력 남용, 22 -공동체, 33 -~에서 함께 존재하고 생활한다, 33 -세상을 알아야, 55, 69 - 오늘의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65 -~의 복음화, 80.

수도원 -~의 봉쇄구역, 34 -대중매체, 55 -수련기, 92 - 교회법적 의미로, 103 (라) -설립과 폐지, 104 -관구, 준관구 혹은 대리관구에 소속된다, 105 -~의 권리와 의무, 106 -총장의 직접 관할권 아래있는, 104, 138 -~의 관면, 116 -관구총회의 회의소집 회람을 받는다, 149(나) -~관할권 아래, 151, 160 -관구장 방문, 152 -수도원장, 165 -~의 회의, 167 -청빈의 증거, 175 -사랑의 유대로 일치하여, 176 -관구 관리에 기여한다, 177 -기타, 공동체를 보시오.

수도원 회의 -권고나 동의한다, 109 -성격, 167 -이 외에도 공동체 회의, 공동체 등등을 보시오.

수도회의 목적 - 1, 2, 3, 4 .

수도회의 복장 -~의 요소, 102 -봉헌의 표시, 청빈의 증거, 102 -관구 총회에서 규정한다, 102 .

수도회의 명칭 - 99 .

수도회의 역사 -양성에서, 81 .

수도회의 사명 -우리 생활과 사도직으로 고난의 복음을 전한다, 2 -교회가 우리에게 위탁한, 2, 64 - 선의의

사람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 69.

수련 전기— 88.

순명— 18 ~ 23 —장상, 관리, 공동체를 보시오.

승인—성직 지망자 혹은 평수사 지망자의 후보자, 91 — 수련기, 유기서원과 종신 서원, 그리고 부제직과 사제직의, 93 —입적을 보시오.

신앙—신앙의 험난한 길, 8 —정결은 신앙 고백이다, 17 —순명, 21 —장상은 신앙의 정신으로, 23 —고난, 65 —사도직, 72 —공부로 심화시켜야, 84 —신앙 고백, 111.
십자가—십자가의 말씀, 1, 3 —십자가의 권능, 3, 22 —십자가의 메시지, 4, 9, 73 —일치의 샘, 26 —십자가의 신비, 53 —주님의 도전, 56 —십자가를 안고서, 72 —십자가의 메시지를 나눈다, 170.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신다, 4 —묵상, 49 —기도, 50 —일치하여 표현한다, 57, 65 —우리의 특별한 사명, 64 —양성, 82 —회헌의 지도와 도움, 100.

십자가의 바오로—그분의 근본적인 감도, 1 —그 정신에 충실한다, 2, 79 —그분의 정신으로 회헌을 실행한다, 4 —청빈, 14 —기도, 37 —참회의 정신, 58 —묵상에 대한 가르침, 66 —복음화, 70 —가난한 사람, 72 —양성 계획서에서, 86 —～의 회칙, 178 —또한 창설자를 보시오.

O

양성 — 77 — 96 — 양성 수도원, 80 — 계획서, 85 — 수련 전 기와 수련기, 87 ~ 92 — 수도회와 서품 승인, 93 ~ 96 회원의 이탈과 퇴회, 97, 98.

양심 **성찰** — 공동체 대화에서, 27 — 기도생활에서, 40.

연대성 — 총회의 책임, 127 (라) — 순종, 21 — 기타, 협력과 공동책임을 보시오.

연례 피정 — 54.

영신 **수련** — 특별하고도 중심적인 우리의 활동, 70.

예수 그리스도 — 그분을 알리기 위한 사명, 1, 3 — 우리의 성세 성사, 7 — 청빈의 모델, 10, 14 — 예수께서 주신 형제들, 17 — 사랑이 정결을 감도한다, 18, 19 — 죽기까지 순종하신, 20, 21 — ~에의 충실, 25, 33 — ~와 일치하여 하느님을 찬미한다, 38 — ~의 기도와 합하여, 39 — 성서 독서에서, 47 — ~에 대한 묵상, 49 — 진리와 생명의 말씀, 63 — ~에게 위탁, 65 — 지난한 사람, 72 — ~의 추종자, 77, 100 — 구원의 신비, 82.

우정 — 우정의 잇점, 19 — 공동체에서, 28 — 공동체 밖에서, 36.

유기 **서원** — 관구장이 서원 갱신을 승인한다, 93. — 관구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된다, 95.

은인들, —은인들로부터 받는 선물, 12 —가장 큰 은인은
부모, 36 —표현해야 할 예모, 36 —감사, 171.

이탈, 수도회로부터— 97, 98.

인격체—공동체에서, 26 —사도직에서, 68 —훌륭한 관리
에서, 108, 120 —또한 책임, 공동체를 보시오.

일—일반 노동법에 복종한다, 11 —경제적 지원의 주요 원
천, 170.

일과표—지방 관습에 맞추어, 35.

일치—생활과 사도직의, 5 —사랑을 통하여, 17 —수도회
의, 32, 119, 120, 125, 126, 142 —그리스도와 세상과, 38.
39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43 —크리스챤 사이의, 74.

입적—93 ~ 96 —서원을 통하여, 101.

大

장상, 고위—봉쇄 구역을 정한다, 34 —참사회의 동의를 얻
어서 수령장, 학생 지도자 그리고 다른 양성 책임자를
임명한다, 81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유기 서원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5 —~의 정의, 110 —관면
주는 권한, 116.

장상, 지방—최종 결정을 내리는 책임, 23 —공동체를 활
성화시키고 지도한다, 23 —순명, 24 —공동체의 결

정을 확인한다, 27 — 공동체는 ~의 권위 아래서 생활 한다, 103 (라) — ~의 허가없이 공동체를 떠날 수 없다, 103 (라) — 성당이나 소성당에서 수도자에게 설교하도록 허가한다, 117 — 기능, 119, 120 — 관구장에 의하여 직책을 확인 받는다, 165 — 한 번에 한하여 재선 된다, 165 — 직무를 떠날 수 있다, 166 — 수도원 회의, 167 — 기타, 순명과 공동체를 보시오.

재능 — 공동체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68, 69.

재산 — 168 ~ 177 — 현세 재물에서의 이탈과 올바른 사용, 10 — 다른이들과의 나눔, 11 — 청빈의 증거, 13 — 권위에 의존하여, 14.

전례 — 고난의 신비, 39 — 기도의 기본 형태, 41 — 하느님의 말씀과의 만남은 제한받지 않는다, 47 — 묵상기도, 49 — 참회 시기, 59 — 우리의 일반 양성에서, 78.

전례 시기 — ~에 행할 참회의 방법과 시간, 59.

전 총장 — 총회 위원, 129.

절제 — 59.

젊은이들 — 30, 79, 80, 81, 82.

정결 — 16 ~ 19.

제물 — 감사의 제사에서 그리스도와 합친다, 42.

준관구 — 103, 160, 161, 162.

준관구장 — 160, 161, 163 — 고위 장상, 110.

지도자, 영적— 61, 97.

지도자, 학생— 요구되는 자질, 81.

지방 공동체— 119 ~ 121 ; 165 ~ 167 — 공동체를 보시오.

지방 분권— 많은 결정권이 위임되었다, 122 — 총체적인 관리가 단일성을 유지한다, 127.

지역 대리관구— 103, 160, 162, 163.

지역 대리관구장— 160, 162, 163 — 고위 장상, 110.

지출— 재산을 보시오.

진복팔단— 수도생활의 기본 정신, 9.

天

참사위원, 관구— 직무상 관구총회 위원, 129 — 선출과 확인, 154, 155 — 기타, 참사회, 관구장을 보시오.

참사위원, 총— 선출, 135, 136, 137 — 직무상의 총회 위원, 129 — 직무를 사임하는 참사위원, 139 — 궐석 참사위원의 대리, 140 — 기타, 총 참사회, 총장을 보시오.

참사회, 관구— 기능, 154 ~ 155 — 요구되는 동의나 권고, 93, 94, 95, 104, 105, 109, 148, 166, 167, 174 — 성직 지망자와 평수사 지망자의 결정, 91 — 관구의 특별법 해석, 115 —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충실성을 판단한다, 124 — 총시노드, 147 — 수도원의 설립, 폐지, 104, 105 — 자

산의 매각과 양도, 174 — 다른 수도원 지원, 176 — 기타, 권위, 관구장, 참사위원, 관리 등등을 보시오.

참사회, 지방—수도원 회의를 보시오.

참사회, 지역 대리관구의— 162, 163.

참사회, 준관구의— 160, 161, 163.

참사회, 총— 135, 136, 137 — 총회에 의하여 참사위원 선출, 127 (바) — 정족수, 140 — 참사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73, 92, 104, 105, 107, 109, 115, 116, 134, 138, 141, 146, 148, 149, 157, 158, 166, 176.

참회— 56 ~ 59 — 근본적인 감도에서, 1.

창설자— ~에게 충실, 2 — ~의 모또, 14 — ~의 가르침, 48, 62 — 그리스도의 고난, 50 — 영적 지도, 61 — 묵상, 66 — 사도직, 70 — 양성에서, 86 — 또한 십자가의 성 바오로를 보시오.

청빈— 10 ~ 15 — 근본적인 감도에서, 1 — 공동체에서, 9 — 수도복이 청빈을 증거한다, 102 — 공동체, 관구 그리고 수도회에서 빛나야 한다, 168 — 경제적 지원, 170 — 수도원은 청빈을 증거해야, 175.

총 규정— 109, 115, 116, 130, 135, 140, 145.

총장— 131 ~ 143 — 종신 서원자들은 ~의 승인을 받아 개인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 15 — 순명, 24 —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당을 접수한다, 73

—양성 계획서를 승인한다, 85—참사회의 동의로 수
련소를 지정한다, 92—준관구장은 ~의 이름으로 관
리한다, 103 (나) —총시노드의 동의를 얻어 관구를 설
립, 폐지, 통합한다, 104—관계 관구 당국의 의견을
듣고,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구를 변경한다, 104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후,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준관구의 설립, 변경 혹은 폐지한다,
104—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대리구를 설립하거나
폐지한다, 104—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구 대리구
를 설립하거나 폐지한다, 104—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서 수도원을 설립하거나 폐지한다, 104—어느 수도원
을 자신의 직접·관할권 아래 둘 수 있다, 105—수도원
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 있다, 106—선교지역을
접수한다, 107—고유한 권위를 행사한다, 109—고위
장상, 110—연령, 110—자신을 선출한 총회 석상에서
신앙을 고백한다, 111 (가) —회헌 변경에 대한 칙서
를 요청한다, 114—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헌을 해
석한다, 115—수도자를 관면한다, 116—신앙과 윤리
문제에 관한 저술의 출판을 허가한다, 118—총회에 의
하여 선출된다, 127 (바) —총회의 당연직 위원, 129
—기능, 131—~의 선거, 133—~의 투표권, 134—
총참사회의 보좌, 135—선출된 자체로 직무를 맡는다,

137 -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부 사무국장, 총장 비서, 총본부 경리, 선교지 총장 비서 그리고 본부 청원인을 임명한다. 그리고 직속 수도원의 원장을 임명한다, 138 - 참사회와 본부 사무국장과 함께 웰석 참사위원을 선출한다, 139 - 개인적으로 공식 방문을 한다, 141 - 주요 의무, 142 - 관구와의 교류를 유지한다, 143 - 시노드의 보좌를 받는다, 144 - 임시 총회를 소집하거나, 규정에서 관면을 허락하거나 관구를 설립, 폐지 및 통합할 때 시노드의 동의를 요청한다, 145 - 시노드를 소집한다, 146 - 시노드를 주재한다, 147 - 관구총회의 일자를 확인한다, 149 (나) - 관구 총회를 주재한다, 149 (마) -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구 총회의 법령을 승인한다, 149 (바) - 관구장의 임기를 확인한다, 151 - 관구장의 방문 보고서를 접수한다, 152 - 관구장과 참사위원들의 임기를 확인한다, 155 -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구장을 임명할 수 있다, 158 - 준관구의 회의에 동의한다, 161 - 준관구 회의를 주재하고, 투표권을 가지며 선거를 확인한다, 161 - 지역 대리관구의 회의를 주재하고, 투표권을 가지며 직무를 확인한다, 162 - 투표권을 가지고 관구 대리구 회의를 주재한다, 162 - 준관구의 규범을 승인한다, 163 - 수도원장의 재선에 대한 관면을 준다,

165 -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수도원장의 직책을 면직할 수 있다, 166 - 부동산의 매입, 양도의 한계를 정한다, 174 -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76.

총장 비서 - 수도자의 신분에 관한 결정 내용을 알린다, 91 - 직무상 총회 위원, 129 - 참사회의 동의를 얻는 총장이 임명한다, 138.

총회 - 126 ~ 130 - 관구의 설립, 폐지 또는 통합, 104 - 관구 대리구의 설립, 104 - 집단적인 권리와 관할권, 109 - 회헌의 변경에 요구되는 승인, 114 - 회헌을 해석하는 권한, 115 - 수도회의 최고 권리, 126 - 일차적인 책임, 127 - 총괄적인 규범과 방향 제시, 128 - 6년마다 개최, 129 - 위원들, 129 - 대표자, 130 - 참사위원들을 선출한다, 135 - 임시 총회, 137 - 총장은 방향을 제시한다, 142 - 총시 노드의 평가, 144 - 총시 노드의 동의에 따른, 145 (가)

충실성 - 창설자의 카리스마에, 79.

침묵 - 공동체에서, 28 - 기도, 37.

E

퇴회 - 97, 98.

투표권 - 선거권, 101, 150 - 피선거권, 101, 150.

Ⅱ

평수사—공통적인 수련기, 91—성직자와 동일한 고난회원의 성소, 100.

포기—청빈, 14—개인 재산의, 15.

○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2—고난, 5—복음적 권고는 ~를 상기시킨다, 7—사도직의 목표, 62, 복음적 과업, 75.

하느님의 말씀—감사의 제사에서, 41, 42—영적 독서, 47—우리 마음 속에 간직한다, 53—~에의 증거, 63.

하느님의 사랑—수도회의 목적, 1—고난에 계시된, 5—정결, 16—순명, 20—기도, 39 ; 49 ~ 52 — 장상에 위하여 표현되는, 120.

하느님과의 일치—근본적인 감도에서, 1—기도에서, 41—다른 사람들을 ~에, 65.

확인—관구장과 참사위 원들의, 151, 155—준관구장, 참사위원 그리고 회의 규범의, 161, 162—지역 회의의 선출, 161, 162—수도원장의 선출, 165.

활동, 사목적—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 67—우리의 특별

하고도 중심적인 활동, 70—크리스챤 신앙을 상실한 집단 내에서, 71—지방 교회에서, 73—평가한다, 76—수련기 동안의, 92—명백해야 할 총회의 책임, 127(다).
협력—순명에 뿌리를 둔, 22—공동체에서, 23—다른 관구와, 32—인간 공동체와의, 34—구원의 신비에서, 38—기도에서, 52—모든 사람들과, 69—선교에서, 75—선교사의 활동에서, 75—사도직에서 협력하는 여러 형태, 76—양성 중에 성령과 협력한다, 77—성소에 대한, 79—양성 중 후보자의, 83—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113.

회개—고난과, 56—외적 표현을 요구한다, 58—화해의 성사에서, 60.

회의, 준관구의— 161, 162, 163.

회의, 지역 대리관구의— 161, 162.

해석—회헌의, 115—관구의 특별법, 115.